

발간등록번호

76-6480230-000001-10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2023년

양산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양 산 소 방 서
(양산시 긴급구조통제단)

< 일러두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등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시·군 긴급구조대응 계획임.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안)(방호구조과-25752호, '22.11.15.)」을 적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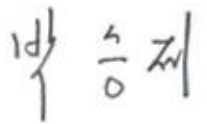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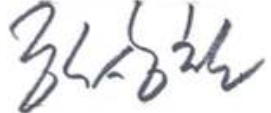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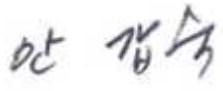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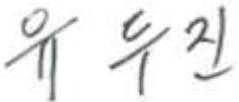


* 국민에 대한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용 가능

◆ 실제 재난상황 및 지휘관의 상황판단에 따라 본 계획서와 다르게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의결서

본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 및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양산시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대비훈련 시에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대응활동에 관한 양산시의 공식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양산시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

기관·단체	대표자	일 자	서명
양산소방서	양산소방서장 박 승 제	2023.2.23.	
양산시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 최 단 오	2023.2.24.	
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장 한 상 철	2023.2.23.	
양산시 보건소	양산시보건소장 안 갑 숙	2023.2.23.	
육군5870부대 제3대대	대대장 정 정 현	2023.2.28.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병원장 김 건 일	2023.2.24.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	지사장 유 두 진	2023.2.23.	
경동도시가스 양산지사	지사장 최 인 환	2023.2.23.	
(주)KT 양산지점	지점장 신 상 민	2023.2.23.	

용어 정의

-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 및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재난안전법 제3조)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긴급구조(긴급대응)** :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이 실행하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와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재난안전법 제3조)
-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해양재난 시 해양경찰청·지방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재난안전법 제3조)
- **긴급구조지원기관(지원기관)** :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조)
- **긴급구조관련기관(유관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
- **기관별 지휘소** :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관련 기관별로 자원관리 및 지휘·통제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지휘차량·선박·항공기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대응계획)** :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계획서(재난안전법 제54조)
- **긴급구조요원** : 긴급구조에 참가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종사자
- **긴급구조지휘대(현장지휘대)** :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일상적인 사고와 재난발생 시(통제단 운영 전 또는 미운영 시) 현장지휘 담당

- **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활동을 총괄·조정 및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비상설·임시기구로, 긴급구조기관 소속 직원과 지원기관의 연락관으로 구성되며 긴급구조기관 소속 직원의 동원과 근무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에 따름(재난안전법 제49조 및 제50조)
-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소방청 통제단, 중통단)** : 소방청이 설치·운영하는 통제단
-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지통단)** :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통제단
 -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소방본부 통제단)** : 시·도의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통제단으로 소방본부장이 단장이 됨
 - **시·군 긴급구조통제단(소방서 통제단)** : 소방서가 설치·운영하는 통제단으로 소방서장이 단장이 됨
- **긴급대응기관협의회** :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지원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1조의2, 소방청 고시 제2019-43호)
- **긴급대응협력관** :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재난안전법 제52조의2)
- **긴급방송체제(비상방송체제, 비상방송시스템)** :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시설 및 절차(재난안전법 제38조의2)
- **선착대** :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긴급구조관련기관의 출동대(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 **대응단계** : 현장지휘관이 재난규모와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원동원 범위(대응 수위)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현장지휘를 선언한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대응단계 결정
 - **대응 1단계** : 9개 이하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하는 단계(펌프+물탱크를 11~20대 동원하거나 재난 확대로 소방력의 지속적인 동원이 예상될 때)
 - **대응 2단계** : 10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하는 단계(펌프+물탱크를 21~30대 동원하거나 재난 확대로 소방력의 지속적인 동원이 예상될 때)
 - **대응 3단계** : 도내 소방력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타 시·도 소방력(전문인력, 특수장비 등)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 전국 소방력 동원령 요청이 필요한 단계
- **비상경고** :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지역 사람들에게 긴급히 전파하는 대피명령 등(재난안전법 제40조)

- **비상경고체제(비상경고시스템)** : 비상경고를 전파하기 위한 절차와 사이렌 등 시설, 유인물, 비상방송시스템, 긴급재난문자, 전화, 팩스 등(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 **비상연락통신체제(Hot-Line)** : 중앙·지역 본부장, 중앙·지역 통제단장,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등 주요 지휘관, 각 기관 상황실 간에 바로 연결되는 유무선 통신망(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 **자원집결지** :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집결 및 분류하여 자원대기소 등에 수송·배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장소 및 시설(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 **자원대기소** : 현장지휘관이 자원의 신속한 추가 배치와 교대조의 휴식 및 대기 등을 위하여 현장지휘소 인근에 지정·운영하는 장소 및 시설(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 **수송대기지역** : 자원집결지에서 자원수송을 위하여 수송수단이 대기하는 장소(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현장지휘관** :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본부장),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 선착대 또는 현장지휘대의 장(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현장지휘소** :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장,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총괄 지휘·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설치·운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천막, 지휘차량, 선박, 항공기 등)(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 **재난대응구역**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가 어려운 경우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지휘작전실, 3C^{Command, Coordination, Control}센터)** : 관련기관 자원의 동원, 관련기관 간의 상호연락 및 협조체제 유지, 관련기관 지휘부 간 소통·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119종합상황실이 그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
- **표준현장지휘체제**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이 체계적인 현장대응과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조직구조, 표준용어, 표준작전절차(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
- **재난안전통신망** :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 및 단말기(재난안전법 제34조의8)

- **국가핵심기반** :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 (재난안전법 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본부)** : 재난을 수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총괄·조정하기 위해서
본부장: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장관 / 각 자치단체장
중앙정부 및 기초·광역지자체에 설치·운영하는 비상설·임시 기구(재난안전법 제14조 및 제16조)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통합지원본부)** : 시·군·구 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설치·운영. 통합지원본부장(부단체장)은 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함.(재난안전법 제16조)



목 차



- 심의의결서
- 수정일지
- 용어정의
- 목차

제1장 기본계획

제1절 계획 개요 1

1. 목적
2. 계획적용 범위
 - 2.1. 자연재난 대응계획
 - 2.2. 사회재난 대응계획
3. 재난대비·대응절차 개요
 - 3.1.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 3.2.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 3.3.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 3.4. 초기대응
 - 3.5. 지원기관 초기대응
4. 긴급구조활동 평가·환류
5. 계획서의 운용책임
 - 5.1. 일반 책임
 - 5.2. 기능별 계획의 운영책임

제2절 긴급구조체제

1. 긴급구조통제단 15

- 1.1. 통제단 표준조직
- 1.2. 명칭
- 1.3. 운영책임
- 1.4. 현장지휘
- 1.5. 설치장소
- 1.6. 기능

1.7. 통제단의 가동 시기	
1.8. 상황판단회의	
1.9. 운영규모 및 기간	
1.10. 대응단계와 통제단 운영	
1.11. 조직 및 임무	
2. 상황실	19
2.1. 운영체제	
2.2. 위치	
2.3. 정보통신체제	
3. 통합지휘체제	22
3.1. 통합지휘 운영개요	
3.2. 지원기관 연락관	
3.3. 유관기관 협조체제	
4. 통제단 - 대책본부 연계	25
4.1. 상호협조 관계	
4.2. 통제단-통합지원본부 협력관계	
4.3. 통제단장-대책본부장 현장지휘	
4.4. 긴급구조활동의 종료	
4.5.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5.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26
5.1. 자원집결지	
5.2. 자원대기소	
5.3. 수송대기지역	
6. 재난대응구역	27
6.1. 운영개념	
6.2. 재난대응구역 운영절차	
6.3. 재난대응구역별 긴급구조대응계획	
6.4. 재난대응구역 통신	
6.5. 재난대응구역에서 기관별 임무	

7. 양산소방서 동부119출장소의 역할	30
7.1. 동부119출장소의 조직	
7.2. 동부119출장소의 관할	
7.3. 동부119출장소의 임무	
7.4. 동부119출장소장의 지휘권	

제2장 기능별 대응계획

제1절 지휘통제 계획(#1)	33
-----------------------	----

1. 목적
2. 조직 및 운영
 - 2.1. 표준조직
 - 2.2. 지휘통제 운영
3. 임무

제2절 비상경고 계획(#2)	37
-----------------------	----

1. 목적
2. 조직 및 운영
3. 임무
 - 3.1. 재난대비 임무
 - 3.2. 재난신고의 접수
 - 3.3. 비상경고 발령
 - 3.4. 통제단 및 지원기관 관계자 비상통지
 - 3.5. 중요 대상에 대한 통지
 - 3.6. 일반 시민에 대한 비상경고
 - 3.7. 비상경고시스템 점검

제3절 대중정보 계획(#3)	41
-----------------------	----

1. 목적
2. 조직 및 운영
3. 임무수행
 - 3.1. 공보담당
 - 3.2. 대중정보센터
 - 3.3.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제4절 피해상황분석 계획(#4) 45

1. 목적

1. 조직 및 운영

2. 임무

3.1. 초기 조사

3.2. 최초 보고

3.3. 지원요청

3.4. 정보의 표시

3.5. 기록 및 최종보고

3.6. 자료 제출 및 확인

제5절 구조·진압 계획(#5) 48

1. 목적

2. 조직 및 운영

3. 임무

3.1. 수색 및 구조

3.2. 안전점검

3.3. 비상발전 및 조명

3.4. 가스 차단

3.5. 긴급 오염방제

3.6. 방사능 탐지

3.7. 고립주민 지원

3.8. 자원집결지 운영

제6절 응급의료 계획(#6) 52

1. 목적

2. 조직 및 운영

3. 임무

3.1. 현장응급의료소장

3.2. 중증도 분류

3.3. 응급처치

3.4. 이송

- 3.5. 응급의료자원 지원
- 3.6. 임시영안소
- 3.7. 응급의료 통신
- 3.8.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제7절 긴급오염통제 계획(#7) 58

- 1. 목적
- 2. 조직 및 운영
- 3. 임무
 - 3.1. 긴급 오염통제
 - 3.2. 식음료 오염통제
 - 3.3. 감염병 통제
 - 3.4. 환경오염 통제

제8절 현장통제 계획(#8) 61

- 1. 목적
- 2. 조직 및 운영
- 3. 임무
 - 3.1. 현장통제 운영
 - 3.2. 교통통제

제9절 긴급복구 계획(#9) 64

- 1. 목적
- 2. 조직 및 운영
- 3. 임무
 - 3.1. 재난현장 긴급복구-지자체
 - 3.2.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설치-소방
 - 3.3. 접근통제 및 수송로 확보-경찰
 - 3.4. 비상전력 공급-한국전력
 - 3.5. 가스차단 및 안전진단-경동도시가스
 - 3.6. 재난지역 및 건물 안전진단-전문기관
 - 3.7. 통신-KT

제10절 긴급구호 계획(#10)	67
1. 목적	
2. 조직 및 운영	
3. 임무	
3.1. 대피 수용	
3.2. 구호자원 지원	
제11절 재난통신 계획(#11)	69
1. 목적	
2. 조직 및 운영	
3. 임무	
3.1.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통신체계	
3.2. 재난통신 보조수단	
3.3. 대체 119상황실 통신	
3.4. 현장지휘소 통신	
3.5. 대중정보센터 통신	
3.6. 대피소 통신	
3.7. 통신 원칙	

제 3장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1. 자연재난 기본계획	75
1.1. 홍수(집중호우)	
1.2. 태풍	
1.3. 폭설	
1.4. 지진	
2. 사회재난 기본계획	79
2.1. 붕괴사고	
2.2. 가스사고	
2.3. 대형화재	
2.4. 화·생·방사고	
2.5. 압사사고	

부 록

1. 참고자료

- 1.1. 방사능 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 1.2.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부 비상연락망
- 1.3. 주요기관 목록
- 1.4. 중요대상 목록
- 1.5.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 1.6.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관 현황

2. 서식

- 2.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 2.2. 비상소집 응소부
- 2.3. 긴급구조통제단 임무 지정서
- 2.4. 상황판단(통합지휘)회의 실시 결과 보고서
- 2.5. 지휘권 이양 협의서
- 2.6. 언론 브리핑
- 2.7. 비상경고 메시지
- 2.8. 재난현장 공동취재단 명단
- 2.9. 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등록
- 2.10. 재난 대응 상황 보고서
- 2.11. 재난현장 상황분석
- 2.12. 재난현장 작전 계획
- 2.13. 긴급구조 대응활동 종합 보고서
- 2.14. 소방력 동원 현황
- 2.15. 자원집결지 운영 현황
- 2.16. 수송대기지역 운영 현황
- 2.17. 긴급구조관련기관 동원 현황
- 2.18. 무선통신장비 관리(배부,반납) 대장
- 2.19. 자원대기소 농영(인원,장비) 현황
- 2.20. 지원장비 및 물품 입,출고 현황
- 2.21. 재난현장 종사자 급식 및 숙박 현황
- 2.22. 인명구조현황
- 2.23. 현장 통제 현황
- 2.24. 통제단 출입증 교부 대장
- 2.25. 의용소방대원 배치 현황
- 2.26. 의료자원 배치 현황
- 2.27. 사상자 조치 현황
- 2.28. 사상자 이송 현황
- 2.29. 병원별 수용능력표

기본계획

제1장 기본계획

제1절 계획 개요

1. 목 적

이 계획은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양산시 차원의 효율적인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체계와 절차, 그리고 경상남도 차원의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국가차원의 긴급구조 대응활동과의 연계 등을 위해 수립한다.

2. 계획적용 범위

기본계획과 기능별 대응계획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재난유형별 계획은 각각의 재난유형에 주로 적용된다.

2.1. 자연재난 대응계획

- 이 계획은 양산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 홍수, 가뭄,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2.2. 사회재난 대응계획

- 이 계획은 양산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화재(산불 포함), 유해화학물질 누출, 건축물 붕괴, 대형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3. 재난대비·대응절차 개요

재난발생에 대비 또는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인 대응 방침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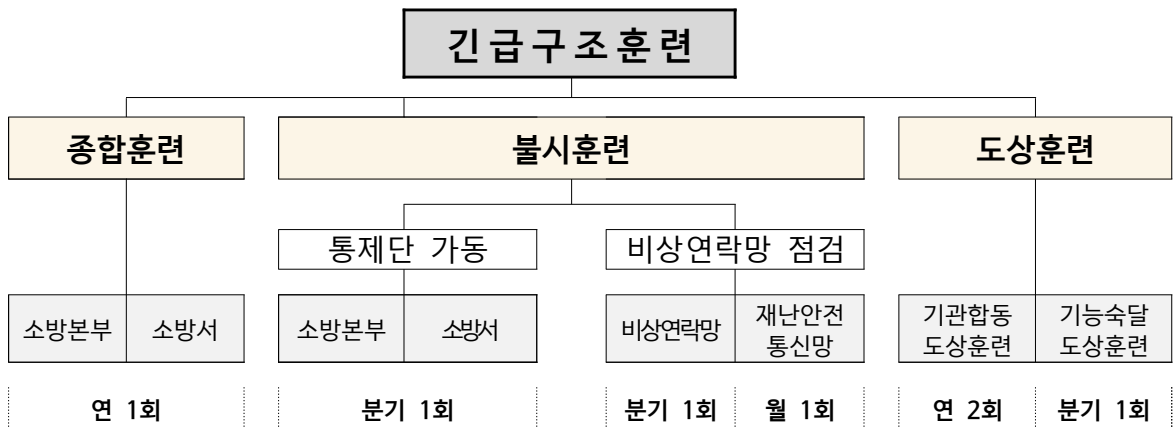
3.1. 재난 대비 긴급구조훈련

○ 훈련근거

- 재난안전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실행)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 훈련 등) 및 15(재난대비 훈련의 평가)

○ 훈련 필요성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에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효율적인 긴급구조 대응역량 배양



○ (긴급구조종합훈련) 재난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통제단 가동,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통제단 및 각 기관 임무·역할 등 수행

-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실시(연 1회)
- 긴급구조기관(소방본부, 소방서), 지원기관(경찰, 군, 지자체, 공사 등) 참여
- 유관기관 인력·장비 동원 및 임무 수행, 통합지원본부 연계·협력 등 훈련
- ※ 도 단위 재난대응 긴급구조훈련 : 도 통제단과 시·군 통제단 합동 실시(연 1회)

○ (불시훈련) 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및 비상연락망 점검 실시

- 불특정 시간에 재난발생(장소, 상황)을 가정하여 통제단을 실제 가동(연 4회)
- ※ 도 통제단 불시훈련 : 시·군 통제단 합동(4개 소방서 각 1회)으로 실시(연 4회)
- 비상연락망 점검훈련 : 비상전파시스템 등을 활용한 지원기관 협력관 연락망 점검
- 재난안전통신망 점검훈련 :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지원기관 점검 및 지휘훈련

○ (도상훈련) 통제단 및 지원기관 간 임무 등을 발표·토론

- 기관합동 도상훈련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이 참여하여 실시(연 2회)
- 기능숙달 도상훈련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자체적으로 통제단 부서(요원)별 임무와 운영절차 숙달(분기별 1회)

3.2.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가. 근거

- 재난안전법 제3조제8호, 제55조제3항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6조제1항

나. 교육개요

- (대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관리자, 담당자
- (교육기간)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 관리자(15차시, 인정시간 7h), 실무자(33차시, 인정시간 14h)
- (운영체계) 중앙소방학교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 1회차 : 2023. 2. 27(월)~3.31(금), 2회차 : 하반기 시행예정
- (참여유도) 교육 미이수자 소속기관 통보, 교육 수료 시 학교장 명의 수료증 발급

다. 지원기관 협조사항

- 관할 소방서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 교육수요(교육대상자) 제출
-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독려

3.3.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 근거

- 재난안전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66조의3 ~ 제66조의5

-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9-43호)
- 목 적 : 지원기관의 능력(전문인력, 보유자원 등)을 파악하여 능력향상을 유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자원동원 및 임무배정
- 개 요
 - 주기 : 연 1회
 - 평가기관 및 대상기관
 - 소방본부 : 시·도 단위 긴급구조지원기관
 - 소 방 서 : 시·군·구 단위 긴급구조지원기관
- ※ 2 이상 긴급구조기관에 해당되는 지원기관 평가 → 주된 소재지 관할 긴급구조기관이 평가
- 절차 :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지침 참조
- 결과 활용 : 신속한 자원동원 및 임무배정과 지원·협업체계 강화

3.4. 초기대응

- 일반적으로 재난(테러, 자연적 재난 등 제외)이 발생한 경우 소방서는 최초의 대응기관이다. 소방서는 초기의 재난상황을 분석하고 재난의 규모와 대응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시작한다.

3.4.1. 일상적 사고

- 일상적 절차로 대응 가능한 사고인 경우 소방과 관계기관이 협조·지원체계로 대응하며 지휘조사팀장(선착대장) 등이 현장 지휘기능을 수행한다.

3.4.2. 재 난

-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을 동원한다.
 - 대응 1·2·3단계 → (사태 완화 시) 대응단계 하향 또는 해제
 - ※ 대응단계를 반드시 순차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 해야 되는 것은 아님
- 다수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의 기능 및 자원이 필요하고 통제단장으로서 지휘·조정·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다.
 - 통제단장은 개략적 재난상황을 해당 자치단체장(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다. ※ 先조치 後보고 가능

- 국가 차원에서 자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방청(중앙 통제단)에 지원을 요청하고 연락·보고체계를 유지한다.
- 소요 자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 통제단이 가동될 수 있다.
 - 시·군·구 통제단은 기존 현장대응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시·도 통제단이나 중앙 통제단은 재난상황에 따라 광역 또는 중앙 차원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군·구 통제단을 지휘·지원한다.
-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대책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 종료 사실을 대책본부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5. 지원기관 초기대응

가.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

- 긴급대응협력관 주요 임무
 - (평상 시) 대응계획 수립에 참여, 당해 기관 보유자원 관리
 - (재난 시) 재난대응 협조 및 지원업무 총괄
 - * 긴급대응협력관 : 지원기관의 장이 소속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 중 지정
- 긴급대응협력관 수행업무
 - 해당 지원기관의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 관련 보유자원 관리와 대비훈련 참여에 관한 사항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소 연락관 파견 등 재난대응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지원기관 능력평가 및 긴급구조활동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변경
 - 지원기관의 장이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문서로 그 사실을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초기대응

- 지원기관들은 재난대응에 필요한 자원 동원에 응해야 한다.

- 동원된 각 요원의 일상 업무는 이 계획상의 임무로 대체된다.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상호응원협정이 체결된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자 포함)의 각 요원(대응계획 상의 필수요원)은 재난안전통신망 및 협력관 비상연락망을 통해 비상통지 및 소집되고, 이 계획상의 임무(재난상황에서 필요 또는 가능한)와 현장에서 분담한 임무를 수행한다.

※ 각 지원기관 소속 직원은 해당기관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해 비상통지 및 소집된다.

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 긴급구조기관의 장과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지원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은 지역단위 재난대응 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다만, 1개 시·도 또는 시·군·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운영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실무책임자를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다른 회의나 훈련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대응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조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구 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내용
명 칭	양산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구 성	긴급구조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 위원장 : 긴급구조기관의 장 / 간사 : 긴급구조기관의 담당 부서장
횟 수	연 1회 이상(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소집)
회 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 재난안전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연락관 파견 등)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활동 평가·환류

가. 근거

- 재난안전법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 통제단장은 재난상황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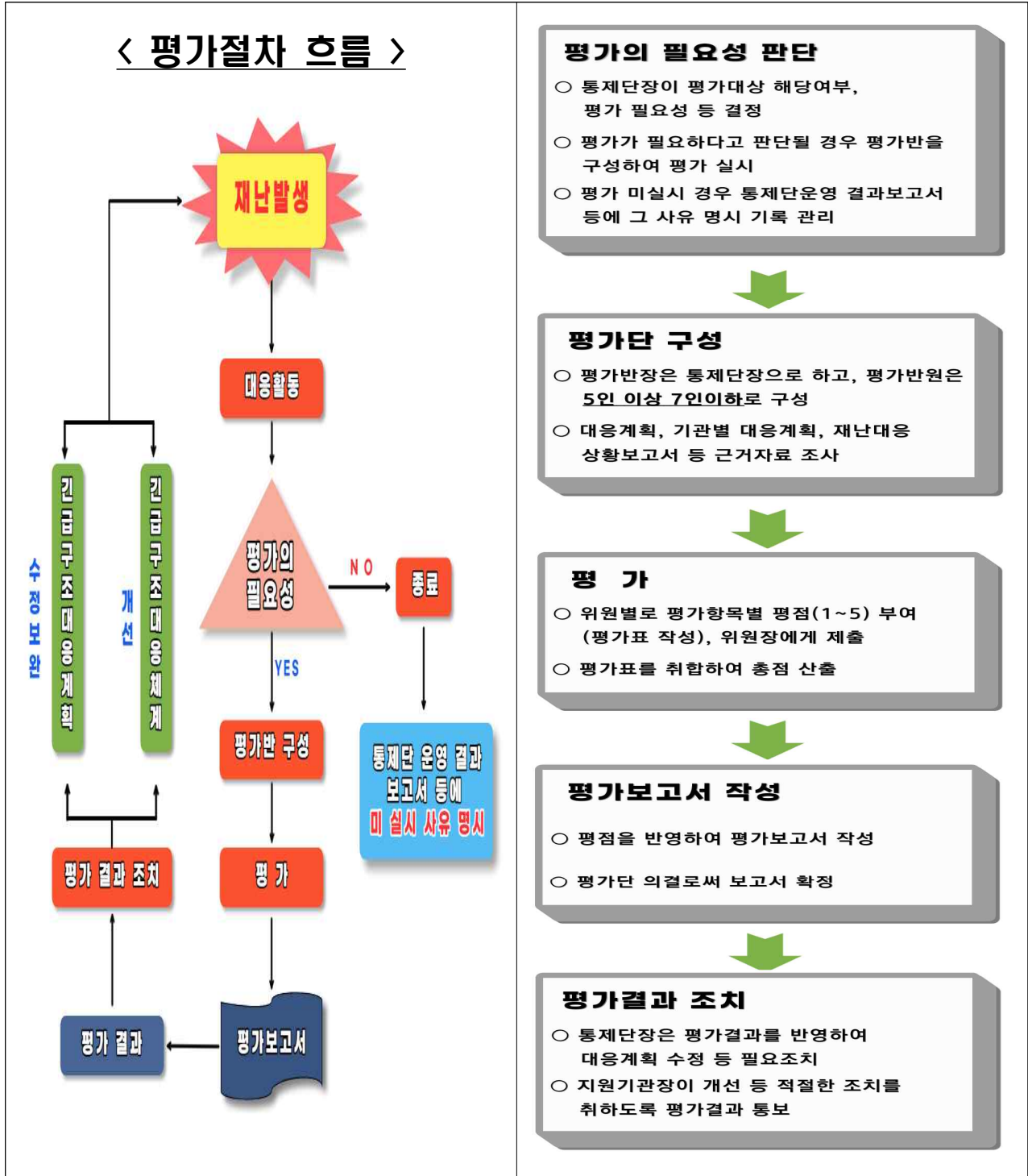
- 평가대상
 - 재난안전법 제36조의 재난사태가 선포된 재난에 대한 대응활동
 - 재난안전법 제50조의 지역통제단이 가동되었을 때 수행한 대응활동
 - 기타 지역통제단은 가동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고대응 활동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한 사고에 대하여 참여한 3개 이상의 지원기관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 긴급구조기관의 장 또는 상급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평가반 구성 : 평가반장(통제단장) 및 반원 5 ~ 7인
 - 통제단장, 통제단 부장, 긴급대응협력관 등
- 평가방법 : 평가기준^다의 각 사항 등이 반영된 평가표에 따라 평가

다. 평가내용

-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 긴급구조대응계획 이행 실태
- 대응활동 참여 요원의 전문성
- 대응을 위한 통신체계 운영
- 긴급구조 교육·훈련 실적
-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통제단장이 정하는 사항

라. 평가 未실행

- 통제단장은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 통제단 운영 결과보고서 등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한다.



5. 계획서의 운용책임

5.1. 일반 책임

이 계획에 포함된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은 다음의 일반책임이 있다.

-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한다.
- 이 계획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대응능력을 유지한다.
-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 및 지원한다.
- 소관임무, 안전관리, 자원현황, 보고·기록서식 등을 확인한다.
- 이 대응계획을 훈련 및 평가하는 과정에 반영한다.
- 각 요원이 이 대응계획에서 정한 임무를 인식·수행할 수 있도록 고지한다.
- 통제단 운영 및 사후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2. 기능별 계획의 운영책임

5.2.1. 지휘통제 계획(기능별 계획 #1)

- 통제단장과 각 지원기관의 장은 이 계획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재난대응의 전반적 지휘·통제 절차를 규정한다.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필요 인력, 장비, 시설 등 자원을 동원한다.
-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필요시)를 운영한다.
 - 문서 또는 구두 지시(무전통신, 전화통신)로도 가능하다.
- 작전계획(대응방침)을 수립·시행한다.
 - 지휘관의 구두 지시(무전통신, 전화통화)로 갈음될 수 있다.
-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배치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통제한다.
- 재난 피해자들에게 긴급구조 등 생명·재산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 재난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보호조치(비상경고, 대중정보)를 시행한다.
- 필요 시 지원기관·단체, 대책본부 등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 필요에 따라 근무인원 및 자원의 재배치를 실시한다.

- 주요 대응활동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한다.
- 각 지원기관·단체의 임무를 조정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5.2.2. 비상경고 계획(기능별 계획 #2)

- 이 계획은 24시간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양산소방서 현장대응단과 양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운영책임이 있다.
- 각 지원기관·단체에 대한 비상연락과 시민에 대한 비상경고체계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한다.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난상황 정보를 접수·수집하고 통제단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 대응계획의 가동(비상체제 가동) 시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즉각 비상경고 계획을 가동한다.
- 주민(일반시민, 장애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재난상황정보를 지자체, 대중매체에 전파한다.
-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상연락·소집하거나 관련기관 상황실에 통지한다.
- 중요 다중이용시설 등에 재난상황을 통지한다.
- 비상경고시스템의 절차 및 수단을 점검한다.
- 재난유형별 비상경고 메시지(안)를 마련한다.

5.2.3. 대중정보 계획(기능별 계획 #3)

- 이 계획은 언론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양산시 통제단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응계획부장(공보 임무 수행자)에게 운영책임이 있다.
- 재난지역 주민, 언론매체, 대책본부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주민보호를 위한 정보(뉴스)를 언론·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제공한다.
-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별 메시지(안)를 개발하고 유지·관리한다.
- 재난관련 현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한다.
- 주민보호에 필요한 대중정보의 요청(질문)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재난현장 방문 자제, 자원봉사 참여 접수 등을 안내한다.
- 인터넷 정보와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여 부정확한 재난상황 정보(유언비어)가 있을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5.2.4. 피해상황분석 계획(기능별 계획 #4)

- 이 계획은 양산시 통제단 대응계획부장에게 운영책임이 있다.
- 피해상황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능에 관한 계획이다.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 사전 위험성 분석 및 초기조사를 실시한다.
- 피해상황 정보를 조사·수집·전파한다.
- 상황 분석·보고, 정보의 표시, 기록유지 등을 시행한다.

5.2.5. 구조진압 계획(기능별 계획 #5)

- 인명구조, 화재진압, 긴급 오염통제(위험물, 유독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재난에 한한다.) 등 일반 재난의 긴급대응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계획으로, 양산시 통제단 현장지휘부장에게 운영책임이 있다.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재난통신체계(기능별계획 #11)를 적절히 활용한다.
- 탐색구조활동을 실시한다.
- 필요시 오염 제거 및 확산방지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 필요시 긴급대피 결정을 내리고 경찰 등과 협조한다
- 주민보호에 필요한 재난현장 정보를 대응계획부를 통해서 또는 직접 대중정보나 비상경고 임무 수행자에게 제공한다.
- 구조·진압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시 특정 지역에 대한 교통통제 및 일반인 출입통제 조치에 대해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5.2.6. 응급의료계획(기능별 계획 #6)

- 재난발생 시 양산시 차원에서 응급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갖춘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 계획의 운영책임이 있다.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통제단장의 지휘방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 응급의료에 필요한 모든 자원(인력, 구급차, 응급의료 시설·장비)의 운용을 조정·통제한다.
- 응급의료소 설치 및 임무지정,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환자이송 등을 지휘·조정·통제한다
- 사망자 신원확인(경찰 협조)과 시신보호(경찰 협조)를 위한 임시영안소를 설치한다.

5.2.7. 긴급오염통제 계획(기능별 계획 #7)

- 이 계획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양산시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에게 있다.
- 오염지역에서의 긴급구조활동과 긴급 오염통제 및 공중보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긴급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의 생명·재산에 위협이 되는 오염의 제거·통제를 위한 임무조직을 편성하고 조직별 임무를 조정·통제한다.
- 식수, 용수, 음식물 공급대책을 지원한다.
- 방역, 소독 활동을 지원한다.
- 재난지역 유해화학물질·폐기물·오염물질 처리활동을 지원한다.

5.2.8. 현장통제계획(기능별 계획 #8)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비상경고계획(기능별 #2) 이행을 지원한다.
- 대본부(통합지원본부), 통제단(현장지휘소), 현장응급의료소, 임시영안소 등 주요 시설 및 자원과 관계자를 보호한다.
- 소방대 출동, 응급환자 이송, 자원 수송 등 위해 교통을 소통·통제한다.
- 주민 긴급대피(소개)를 지원한다.
- 필요시 위험구역에 대한 통행금지를 실시한다.
- 광범위한 재난지역의 탐색구조 및 경상자 이송업무를 지원한다.

5.2.9. 긴급복구계획(기능별 계획 #9)

- 긴급구조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임시) 복구활동에 관한 것이며, 양산시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에게 이 계획의 운영 책임이 있다.
- 긴급복구 활동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진행하다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에게 이양한다.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구조작업을 지원한다.
- 출동, 이송, 자원수송 등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의 자원을 동원하고 임무를 지정·조정한다.
- 2차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진단 등 기술 공학적 조치를 지원한다.
- 기타 긴급구조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다.

5.2.10. 긴급구호계획(기능별 계획 #10)

- 이 계획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양산시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에게 있다.
- 재난피해자 및 긴급대응활동에 참여한 인력의 심신보호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 이 기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나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협력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긴급대응활동 종료 시에는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로 이양한다.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긴급구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편성하고 임무를 조정·통제한다.
- 이재민과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인원에게 식사, 공중위생, 세척, 긴급대피공간(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난심리 상담(외상후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기타 정신건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 구호물자 긴급 수송과 이재민 긴급 이송을 지원한다.
- 고립자, 이재민 등에 대한 의식주 긴급 제공 등을 지원한다.

5.2.11. 재난통신계획(기능별 계획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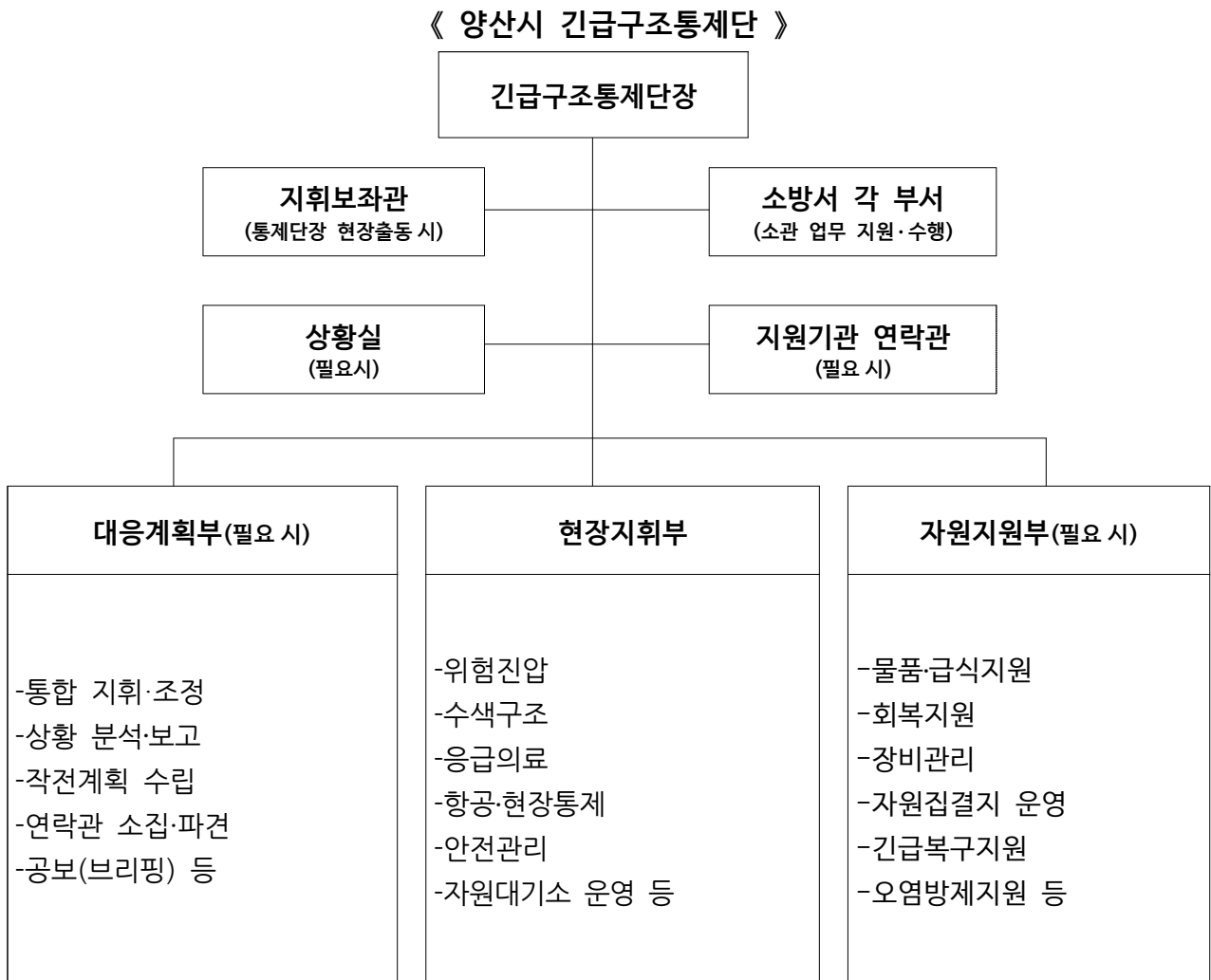
- 재난발생 시 관련기관 및 재난대응자들 간 원활한 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며, 양산시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에게 이 계획의 운영책임이 있다.
- 재난상황별 필요 또는 가능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 통제단 주요 지휘관 간의 통신체계 및 통신절차를 확립하고 조정한다.
- 지원기관 지휘관(소), 자원봉사단체들 간의 통신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한다.
- 주요 지원기관의 상황실과 통제단 간의 통신체계를 유지한다.
- 119종합상황실, 현장지휘소, 대중정보센터 등에 통신시스템을 설치·유지한다.
- 대체 보조통신 수단을 확보한다.
- 재난통신망 단말기를 충전·분배하고 통신체계를 유지·점검한다.

제2절 긴급구조체제

1. 긴급구조통제단

1.1. 통제단 표준조직



(예시 임무로 재난상황에 따라 선택적 또는 새로운 임무 가능)

※ 조직 구성원은 본래 소속부서 및 업무 대신,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 등에 따라 비상근무로서 통제단 업무 수행

※ 현장지휘소 = 통제단 또는 1개 이상의 현장지휘소를 별도로 설치·운영 가능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안)(방호구조과-25752호, 2022.11.15.)」 반영

1.2. 명칭

- 양산시 긴급구조통제단으로 명칭을 사용한다.

1.3. 운영책임

- 통제단장은 긴급대응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임무와 활동을 통합 지휘·조정·통제하는 전반적 책임을 진다.

1.4. 현장지휘

- 양산시 통제단장이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 관련 사항은 양산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경남 통제단장은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의 운용은 통제단장의 지휘·조정·통제에 따라야 한다.
- 중앙 통제단장은 필요하다면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통제단장(서장, 본부장, 청장)은 효율적 지휘를 위해서 명령 전달·기록, 통신, 보고 등을 보좌하는 전담 인원을 배치한다.

* ‘지휘선언’ 절차가 필요하며 “지휘권 선언(이양)”이 전체 지휘권의 이동으로 오해를 초래하여 “**지휘선언**”으로 용어를 수정한다. 현장 **지휘선언**(이양)은 지휘의 한 형태로서 대응자들에게 직접 지시·명령하는 현장지휘관을 정하는 절차(명령통일원칙 유지 차원)입니다. 따라서 현장 **지휘선언**(이양)과 관계없이 각급 지휘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임은 변화하지 않는다.

1.5. 설치장소

- 통제단은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재난 등 광범위 재난 발생시 소방서 상황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필요 시 통제단장의 판단에 따라 통제단(지휘소) 운영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 통제단 현장지휘소 자체가 통제단이 되거나 현장지휘소를 별도로 1개 이상 따로 설치할 수 있다.

1.6. 기 능

- 통제단은 양산시 차원의 긴급구조 대응활동을 통합 지휘·조정·통제한다.
- 각 지원기관이 현장지휘소를 설치할 때에는 지휘소의 설치 사실과 위치에 대해 통제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지원기관의 장은 양산시 전역에 걸친 긴급구조 대응활동에 대한 지원책임을 진다.

1.7. 통제단의 가동 시기

- 현장지휘관이 일상적 사고가 아닌 재난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기능 및 인력·장비·물자를 동원하여 통제단장으로서 통합 지휘·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가동한다.
 - 구두(무전) 지시(보고) 또는 문서로써 가동할 수 있다.

1.8. 상황판단회의

구 분	내 용
개 최	▸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개최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장소의 제한 없음
주 재	▸ 통제단장(서장) 또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참 석	▸ 참석 가능한 통제단 각 부장, 관계 전문가, 긴급대응협력관, 연락관 등
내 용	▸ 재난상황(재난 원인, 전개 양상, 확대 가능성, 피해 현황 등) ▸ 통제단 가동 여부와 운영 규모, 대응 방안 등
절 차	▸ 공지 → 회합 ^{통신(전화, 화상)으로도 가능} → 상황 보고·확인 → 판단, 결정 → 결과 전파, 기록 ^(근무일지나 상황보고서에)

1.9. 운영규모 및 기간

- 통제단의 운영규모(필요 기능 및 인원)는 재난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통제단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상황에 따라서 통제단 운영규모, 조직구성, 근무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통제단장은 대책본부장에게 통제단 가동 등을 보고한다. <선조치 후보고 가능>

1.10. 대응단계와 통제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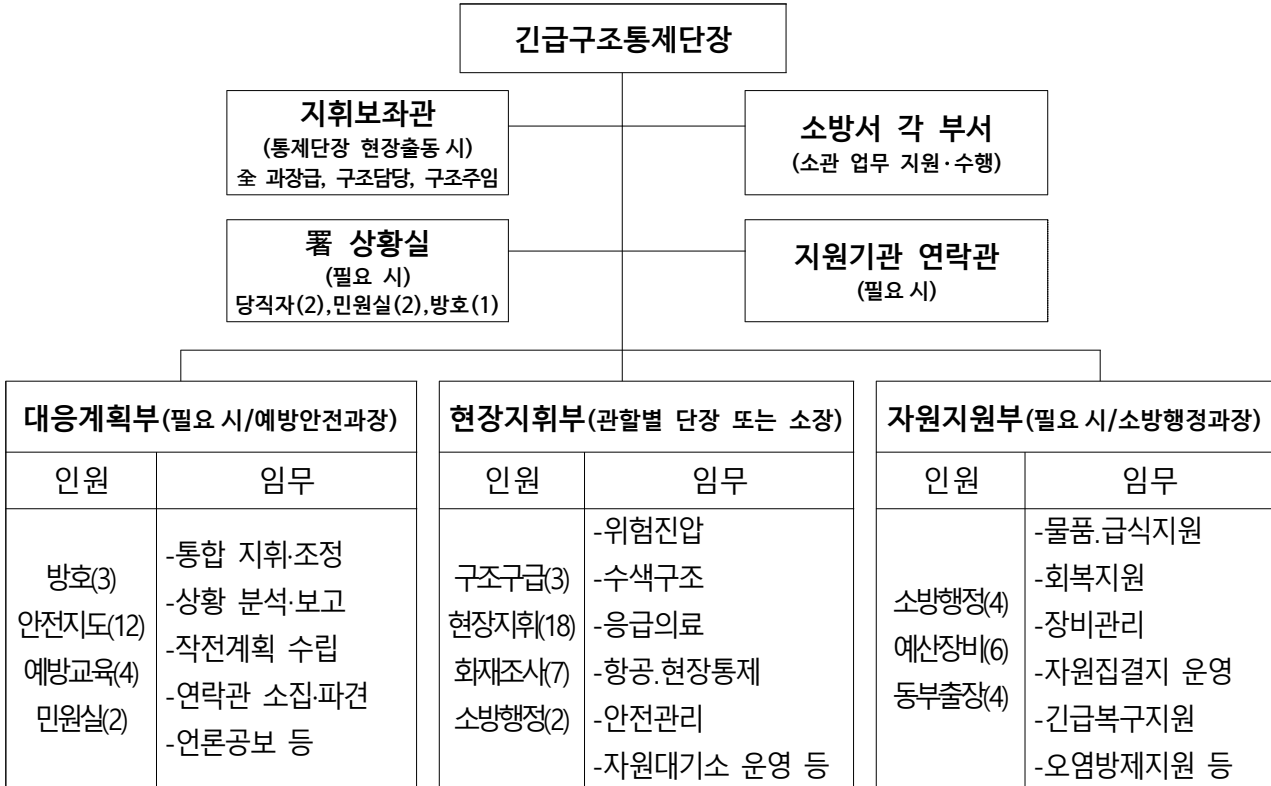
- 2023년부터는 ‘대응단계’가 발령되어도 ‘통제단’은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
- 대응단계는 현장지휘관이 자원 확보(대응 수준) 차원에서 ^{시·도별 자체 기준} 1.2.3단계로 운영한다.
- 통제단은 재난 규모, 피해 양상,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통제단장의 판단(상황판단 회의 등)에 의해 가동여부를 결정한다.
 - ※ 시·군·구(소방서) → 시·도(본부) → 중앙(소방청)으로 확장이 아니라, 각 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운영
- 중앙(소방청)의 개입·지원은 어떤 대응단계에서도 가능하다.

《 대응단계 기준(2023년 경상남도 소방출동 운용지침) 》

단계	기준	활동 개요
대응 1단계	9개 이하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하는 단계 (펌프+물탱크를 11~20대 동원하거나, 재난 확대로 소방력의 지속적인 동원이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현장지휘소)을 가동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소방서장 또는 현장지휘대장이 지휘할 수 있다. • 지원기관이 제한적으로 동원되거나 협조할 수 있다.
대응 2단계	10개 이상 소방서의 소방력으로 대응하는 단계 (펌프+물탱크를 21~30대 동원하거나, 재난 확대로 소방력의 지속적인 동원이 예상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현장지휘소)를 가동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직접 현장 지휘할 수 있다. • 지원기관의 자원을 동원하여 통합 지휘조정통제할 수 있다. ※ 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은 경우 협력·지원체계로 대응하는 것이다 • 국가 차원의 자원 동원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응 3단계	도내 소방력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타 시·도 소방력(전문인력, 특수장비 등)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 전국 소방력 동원령 요청이 필요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을 가동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지휘할 수 있다. • 지원기관의 자원을 동원하고 통합 지휘조정통제할 수 있다. ※ 통제단이 가동되지 않은경우 협력·지원체계로 대응하는 것이다 • 국가 차원의 자원 동원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1.11. 조직 및 임무

- 재난의 유형·규모·특성에 따라 필요 기능(인원)을 선택적으로 확대·축소한다.



* 예시 임무로 재난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을 선택적 또는 새로운 임무 가능

2. 상황실

2.1. 운영체제

- 양산소방서 상황실은 필요시 통제단장(소방서장) 및 119종합상황실장의 판단에 의해 운영된다.
- 재난이 광범하게 확대되거나 심각한 경우에 양산소방서 상황실이 가동되고, 상황실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연락관 파견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기관에 대해 통제단(현장지휘소, 상황실)으로 연락관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요청받은 지원기관은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하며 신속한 파견이 어려울 경우 통신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2. 위 치

- 양산소방서 상황실은 양산소방서 건물 2층에 위치한다.

2.3. 정보통신체계

다음은 상황실 정보통신체계의 구성요소를 기술한 것이다.

2.3.1. 비상연락통신체계(Hot-line)

- 이 체계는 양산소방서 주요 지휘관 간 유·무선으로 Hot-line으로 구성된다.
- 재난 등 비상사태 시 양산시장, 경찰서장,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지역 군 부대장 등 양산시의 핵심 간부와 지휘소와의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 재난안전통신망, 개인이동통신, 위성전화기 등을 준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3.2. 보조통신체계

- 보조통신체계는 양산시 아마추어 무선(HAM), 응원협정을 체결한 택시 사업자(TRS), 기타 통신자원봉사자와 그 보유 통신장비로 구성된다.
- 보조통신체계의 구성원은 고립지역 통신지원, 긴급대피 정보 전파, 통신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3.3. 보조통신체계 조직

- 보조통신체계는 양산시 통제단 자원지원부에서 조직·운영한다.
- 보조통신서비스는 양산시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의 통제하에 운영된다.
- 보조통신서비스에 참여하는 요원에 대해서 재난대응체계 및 보조통신에 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2.3.4. 비상경고시스템

- 비상경고시스템은 각 언론매체(방송, 신문, 인터넷)와 보조통신 요원 등에게 주민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각 대응구역별 비상경고시스템 및 도 통제단 대응계획부와 119종합상황실과 연계된다.

- 비상경고시스템은 양산소방서 상황실 및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한다.

2.3.5. 긴급방송체계

- 재난발생 시 일반인에게 비상경고, 긴급대피, 기타 공공정보를 전달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방송 시설 및 채널이다.
 - 양산시 통제단 대응계획부(공보 업무 담당)에서 지역방송사 등을 통해 방송할 수도 있다.

2.3.6. 이동 지휘통제시스템

- 경상남도 소방본부 통합지휘차량(통제단 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
- 통합지휘차량 자체를 현장지휘소로 이용하거나 현장지휘소 인근에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통합지휘체계

3.1. 통합지휘 운영개요

3.1.1. 통합지휘체계 개념

-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각 지원기관의 자원을 하나의 지휘체계(대응계획)에 따라 조정·통제하는 대응체계를 말한다.
- 통합지휘체계는 통제단장, 표준조직체계(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지원기관 연락관, 119종합상황실 등)를 통해서 확립된다.

3.1.2. 통합지휘 적용기준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합지휘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 다수의 지원기관(국가기관 포함)이 공동 대응하는 재난 발생
 -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재난 발생

3.1.3. 통합지휘 책임

- 경상남도 소방본부(방호구조과)나 각 대응구역별 소방서(통제단)는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 기능별계획의 가동책임이 있는 지원기관은 통제단에 연락관을 파견하고 통합지휘에 따라 지원 및 임무수행의 책임이 있다.

3.1.4. 통합지휘절차

- 통합지휘체계는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단장이 재난의 유형·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기능을 선택 및 확대(축소)하면서 운영한다.

단계	통합 지휘 운영
양산시 통제단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산시 통제단장 또는 소방서 현장지휘대장이 지휘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자원을 동원하고 통합 지휘조정·통제한다.
도 통제단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산시 통제단장 또는 도 통제단장이 지휘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자원을 동원하고 통합 지휘조정·통제한다.
중앙 통제단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통제단장 또는 중앙 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자원을 동원하고 통합 지휘조정·통제한다.

3.2. 지원기관 연락관

3.2.1. 기능

- 통합지휘에 따라 각 지원기관의 자원동원 및 대응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통제단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현장지휘소(통제단장)와 지원기관의 지휘관 간 협력·통신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3.2.2. 조직

- 양산시 통제단의 연락관은 지원기관(경찰, 지자체, 군, 전기, 가스 등)의 파견자로 구성된다.

3.2.3. 활동

- 현장 도착 전부터 동원 자원, 분담 임무, 지휘관 연락수단 등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활동에 대해서 협의해야 한다.
- 상황실 또는 재난현장(지휘소)에 신속하게 합류하여야 한다.
 - 신속한 합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합류 전까지 통신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3.3. 유관기관 협조체제

3.3.1. 근 거

- 유관기관의 협조는 재난안전법 제51조(긴급구조)에 따른다.
- 필요한 경우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협력할 수 있다.
 - 양산시외 자치단체에 협조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인근 시(군)는 재난 시 각 대응구역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의무가 있다.

3.3.2. 대응구역별 유관기관 협조체제

- 대응구역별 유관기관 협조체제는 경상남도 통제단(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에서 조정한다.
- 상호협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통제단은 대응구역을 상호협조 단위로 묶을 수 있다.

- 통제단장은 각 대응구역 내 주요 관련기관의 장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3.3.3. 기능별 협조체제

- 관련기관 상호협조체제는 아래 각 기관(부서)이 기능별로 관리한다.

상호협조 분야	책임기관(부서)
1. 지휘통제계획 상호협조	양산소방서(현장대응단)
2. 비상경고계획 상호협조	양산소방서(예방안전과)
3. 대중정보계획 상호협조	양산소방서(예방안전과)
4. 상황분석계획 상호협조	양산소방서(예방안전과)
5. 구조진압계획 상호협조	양산소방서(현장대응단)
6. 응급의료계획 상호협조	양산시보건소(보건행정과)
7. 오염통제계획 상호협조	양산시보건소(보건행정과), 양산시(기후환경과),(수질관리과)
8. 현장통제계획 상호협조	양산경찰서(경비교통과)
9. 긴급복구계획 상호협조	양산시 안전도시국(시민안전과)
10. 긴급구호계획 상호협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11. 재난통신계획 상호협조	양산소방서(현장대응단)

3.3.4. 기능별 협조체제의 운영책임

- 각 기능별 계획의 주요 지원기관(부서)은 계획에 참여하는 지원조직의 자원을 조정·통제하는 책임이 있다.
 - 각 지원기관(부서)은 각 임무별 대체 책임자 및 운영요원을 지정하고 상시 대응태세를 갖춘다. 대체자는 책임자 부재 시 책임자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각 기능별 계획의 책임자들은 주기적으로 소관 임무 수행상황을 대책본부장, 통제단장 등에게 브리핑하고 각 기능별 상황판에 관련 상황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제공한다.

3.3.5. 지원기관 현장지휘소(비상대책상황실)

- 각 지원기관은 통제단과의 상호 통신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자체 현장지휘소를 운영할 수 있다.
- 긴급구조활동의 우선순위 등 대응방침이 결정되면 각 지원기관 지휘관(연락관)은 통제단장에게 가용자원 및 준비태세를 보고하고 임무를 할당받는다.

3.3.6. 지원기관 현장지휘소 세부 운영계획

- 각 지원기관은 현장지휘소의 세부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세부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 지휘소의 설치와 종료에 관한 사항
- 근무자 교대 계획
- 연락관 지정 및 통신체계
 - 내부통신, 통제단과의 통신, 119종합상황실과의 통신 등
- 상황 통보(보고) 및 브리핑 계획
- 상황정보의 수집·평가·전파 절차
- 교통·수송 수단 운영 계획
- 자원 동원 및 배치 절차

4. 통제단-대책본부 연계

4.1. 상호협조 관계

-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재난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대책본부장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 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재난현장을 통합 지휘·통제한다.
 - 통제단장은 지원기관의 장, 대책본부장 등에게 긴급구조활동에 대해서 자원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2. 통제단-통합지원본부 협력관계

- 재난안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통제단장은 통합지원본부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통합지원본부장은 통제단장의 지원요청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4.3. 통제단장-대책본부장 현장지휘

- 대책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서는 통제단장의 지휘·조정·통제를 따라야 한다.

4.4. 긴급구조활동의 종료

-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대책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 종료 사실을 대책본부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5.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 통제단장은 긴급구조에 관한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의무위반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그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자에 대한 조사·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제단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60일 이내에 조치결과의 회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5.1. 자원집결지

- 양산시 통제단장(자원지원부장)은 재난지역 인근에 자원집결지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자원집결지는 긴급구조기관이나 지원기관의 많은 자원이 응원·협조·동원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 운영된다.

- 자원집결지는 긴급구조·구호자원을 필요한 곳에 배치 및 배포하고 부상자의 원거리 이송을 지원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 자원집결지는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전 지정 자원집결지의 활용이 곤란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에 적절한 장소를 새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동원되는 자원은 공표된 자원집결지에 집결한다.

5.2. 자원대기소

- 자원대기소는 현장지휘소 인근에 지정하며 자원집결지의 전진기지 기능을 수행한다.
- 자원대기소의 용도는 현장 투입 전 인원·장비 대기, 대응요원들의 휴식 및 교대조 운영 등이다.

5.3. 수송대기지역

- 대응요원, 장비 등을 재난현장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필요시 자원집결지에 또는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수송대기지역은 통제단의 자원지원부장이 지정·운영한다.
- 각 소방서가 수송대기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다.

6. 재난대응구역

6.1. 운영개념

- 재난대응구역은 지휘통제가 마비되거나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 재난이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소방본부 관할 전역에 각 소방서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 각 대응구역별로 양산시 통제단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 필요시 경상남도 통제단이 가동되어 각 대응구역(통제단)을 지휘·지원할 수 있다.

6.2. 재난대응구역 운영절차

- 지진과 같이 재난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자동 운영된다.
-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긴급대응활동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황파악(피해평가), 인명구조, 부상자 처치·이송, 상황보고, 지원기관 동원 및 통합 지휘·통제, 사망자 안치, 자원 동원·배분, 긴급복구 등
- 여러 재난대응구역과 관련된 지원기관은 각 재난대응구역(양산소방서 상황실, 현장 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하고 지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6.3. 재난대응구역별 긴급구조대응계획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에 관할 시(군)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소방서에 복수의 시(군) 대응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재난대응구역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6.4. 재난대응구역 통신

- 경상남도(소방본부) 단위 통신체계와 함께 재난대응구역 단위로 소방서가 중심이 되는 통신체계를 구축한다.
- 재난대응구역 통신체계 구축은 양산소방서 자원지원부 책임하에 확립한다.

6.5. 재난대응구역에서 기관별 임무

기관(기능)	임 무
소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사고 대응 및 재난 시 통제단 설치·운영(재난현장 지휘, 조정, 통제) ○ 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자체 등과의 긴급구조 대응체계 확립 및 유지 ○ 재난정보 접수·파악 및 전파(보고) ○ 인명구조, 부상자 처치·이송, 위험 제거 등 긴급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긴급 복구·오염통제, 대피명령, 현장 브리핑, 대중매체 등을 통한 재난 정보 제공 등 ○ 소방서와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간 통신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선 전화, 재난안전통신망, 소방무전 등

경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및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와 통신체제(재난안전통신망 등) 유지 ○ 재난지역 현장통제(질서유지, 출입통제, 교통소통, 통로확보 등) ○ 사상자 신원 파악 및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수색·구조 지원 ○ 통제단(현장지휘소 또는 양산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 파견 등
군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및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와 통신체제(재난안전통신망 등) 유지 ○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수색·구조 지원 ○ 긴급 복구·오염통제, 수송 등을 위한 자원 지원 ○ 통제단(현장지휘소 또는 양산소방서 상황실)에 연락관 파견 등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분류·처치·이송 및 사망자 안치 조정·통제 - 통제단(지휘소)과의 통신담당 요원 지정 - 적정·분산 이송을 위한 의료·병상정보 파악 ○ 재난응급의료에 필요한 장비·물품 확보 ○ 통제단장 브리핑 시 사상자 처치·이송·안치 상황 브리핑 등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비 등을 활용한 긴급복구 활동 및 긴급구조활동 지원 ○ 긴급구조 대응자원 수송, 주민대피 등을 위한 수송수단 제공 ○ 긴급 오염통제 및 오염구역 긴급구조활동 지원 ○ 재난피해자 긴급 구호 및 대비 조치 등
수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 차단 및 수도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자원 배치 ○ 통제단(현장지휘소)에 연락관 배치
가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누출지점·확산범위 확인, 누출 차단, 가스 종류 확인 등), 가스 공급시설 긴급복구, 사고원인 조사 참여 등을 위한 인력·자원 배치 ○ 통제단(현장지휘소)에 연락관 배치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된 전력공급 재개 및 비상전력 공급을 위한 인력·자원 배치 ○ 긴급대응활동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력 차단 조치 ○ 사고원인 조사 참여 조사요원 및 통제단(현장지휘소)에 연락관 배치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절된 통신 회복 및 비상통신 제공을 위한 인력·자원 배치 ○ 통제단(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7. 양산소방서 동부119출장소의 역할

7.1. 동부119출장소의 조직

- 동부119출장소(이하 동부출장소)는 출장소 산하 지휘팀, 민원실, 동부119구조대로 편성한다.
- 동부출장소에 소장 1인과 지휘팀 9명, 민원실 3명, 구조대 13명을 둔다.

7.2. 동부119출장소의 관할

- 양산시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 덕계동 일원을 관할한다.
- 동부119구조대, 웅상119안전센터, 평산119안전센터의 현장출동에 관한 사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7.3. 동부119출장소의 임무

- (민원실) 관할 내 건축동의, 소방시설 완공, 위험물 인·허가, 완비증명, 자체점검 접수 등
- (지휘팀) 관할 내 소방현장 출동·지휘·보고, 소방대상물 훈련 지도
- (구조대) 관할 내 구조출동에 관한 사항

7.4. 동부119출장소장의 지휘권

- 동부출장소장은 통제단이 가동되기 전까지 관할 및 소속 지휘팀의 지휘권을 갖는다.
- 동부출장소의 지휘팀장은 관할 내 긴급구조지휘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통제단 가동 시 동부출장소의 행정근무자는 본 계획에 의거 부여 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서 행정근무자와 동일하게 비상소집(응소)의 의무를 가진다.

기능별 대응계획

제2장 기능별 대응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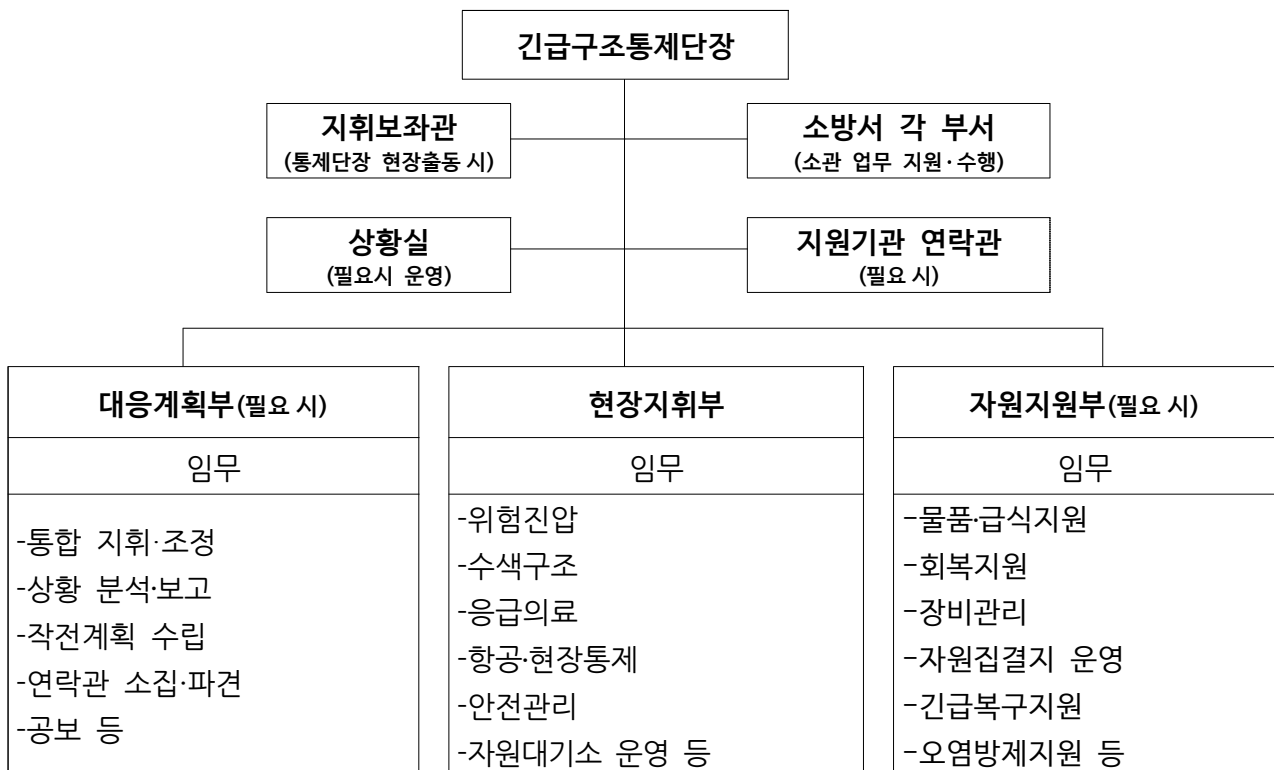
제1절 지휘통제 계획(#1)

1. 목 적

-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계획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재난상황에 따라 선택적 또는 다르게 활용된다.

2. 조직 및 운영

2.1. 표준조직



* 예시 임무로 재난상황에 따라 선택적 또는 새로운 임무 가능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계획(방호구조과-25252호(2022.11.15.))」 반영

- 통제단은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부, 자원지원부, 상황실, 지휘보좌관, 지원기관 연락관으로 구성된다.
 - 통제단 조직(기능)은 재난상황에 따라 선택·부분적(확대 또는 축소)으로 운영된다.
- 통제단장 현장 도착 전까지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지휘조사담당)가 현장지휘 기능을 수행(재난상황 등을 통제단장에게 수시 보고)한다.
 - 통제단장이 현장 대응자들에게 직접 지시·명령을 하고자 하면 ‘지휘선언’을 하여야 한다.
 - 통제단장이 ‘지휘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구조 대응활동에 대한 통합적 지휘·조정·통제의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
- 재난의 규모, 피해범위, 특수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통제단 외에 시·도 통제단이나 중앙 통제단이 운영될 수 있다.
 - 시·군·구 통제단은 재난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긴급대응 활동을 지휘·조정·통제하고, 시·도나 중앙 통제단은 광역 또는 중앙차원의 대응조치와 함께 시·군·구 통제단을 지휘·지원한다.

2.2. 지휘통제 운영

2.2.1. 1차 대응

- 현장지휘대장은 통제단 운영(통제단장 현장지휘) 전까지 지휘통제계획 운영책임이 있다.
- 모든 대응 인력·자원은 지휘통제체계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2.2.2. 시·군 통제단 대응

- 시·군 통제단장이 긴급대응 활동을 통합 지휘·조정·통제한다.
 - 현장지휘관이 일상적 사고가 아닌 재난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기능 및 인력·장비·물자를 동원하여 통제단장으로서 지휘·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통제단을 가동한다.
 - 통제단장의 구두(무전) 지시 또는 문서로서 통제단이 가동되며, 현장지휘대장이나 선착대장이 선 가동 후 통제단장에게 보고(승인)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는 현장 또는 상황실(지휘작전실)에서 수시로(필요 시) 개최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가 통제단 가동^{지휘관의 직관적 상황 파악 및 판단에 따라 가능}의 필수 절차가 아니며 생략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 참여 범위나 절차는 당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 각 지원기관 등은 자원 동원 요청에 응하고 통제단장의 지휘(임무 배정)에 따라 긴급대응 활동에 참여한다.

2.2.3. 도 통제단 대응

- 각 시·군 통제단(소방서)을 지휘하고 통제단 간 협력을 지원·조정한다.
- 단일 재난현장 또는 다수의 재난현장에 대해서 통합 지휘·조정·통제한다.
 - 통제단장(소방본부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휘선언’ 후 대응 자들에게 지시·명령할 수 있다.
 - 중앙통제단(소방청)에 대한 재난상황 보고와 광역 차원에서 요구되는 대응조치를 수행한다.
- 경상남도(소방본부) 통제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운영된다.
 - 광범위한 재난피해(발생 우려)로 다수의 소방서 통제단 운영 시
 - 지역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 재난의 규모·특성, 동원 자원 규모,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광역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임무

- 긴급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기능)를 동원한다.
 - 지원기관 등은 동원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
- 통제단 및 현장지휘소(필요 시)를 가동한다.
 - 문서 또는 구두지시(무전통신)로도 가능하다.
- 주요 대응활동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한다.
- 작전계획(대응방침)을 세우고 시행한다.

- 현장지휘관의 구두지시(무전통신)로 대체될 수 있다.
- 재난상황을 판단하여 대응목표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 및 임무를 배정한다.
- 필요에 따라 대응목표 및 임무, 근무자 및 자원을 조정(재배정)한다.
-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인명구조 등 생명과 재산상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 재난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보호조치(대피명령, 비상경고, 대중정보 등)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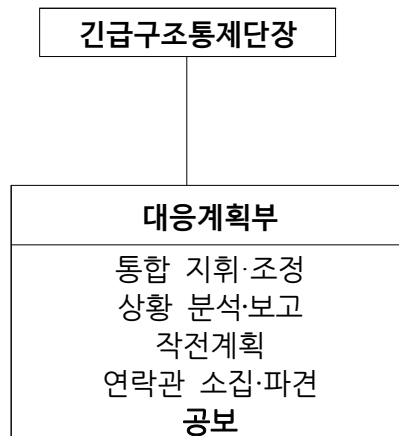
제2절 비상경고 계획(#2)

1. 목 적

- 시민보호를 위한 비상경고, 재난상황 통보, 대중전파, 긴급대피, 상황전파, 비상연락을 위한 것이다.
- 통제단의 긴급구조 비상경고 활동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통제단 운영시의 비상경고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비상경고관련 지원기관의 역할 및 종합적인 자원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조직 및 운영

- 양산시 통제단 대응계획부(공보(홍보) 임무 수행자)가 이 계획을 운영한다.



- 양산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재난발생 사실, 피해발생 위험 등에 관한 재난상황 정보를 접수·수집한다.
 - 재난상황 정보를 판단하여 비상경고 메시지 전파 등 비상경고를 시행한다.
- 통제단이 가동되면 공보(홍보) 임무 수행자가 통제단장의 승인(보고)에 따라 비상경고를 시행한다.
 - 사이렌, 현장 방송, 주거·다중이용시설 방문,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재난안전문자 발송, 옥외광고,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파한다.

3. 임무

3.1. 재난대비 임무

- 양산소방서 현장대응단은 일상·기본임무로서 비상경고 전파절차를 수행한다.
 -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임무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다.
- 비상경고 관련 절차와 시스템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3.2. 재난신고의 접수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재난발생 또는 발생위험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핵심 경로는 주민(피해 당사자 또는 목격자)들의 119신고이다.
 - 상시 원활하게 119신고를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
 - 전화통화 외에 인터넷(SNS, 신고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 유관기관은 고유업무 수행과정에서 재난관련 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119종합상황실로 통보해야 한다.
-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재난발생 위험성 판단과 대비조치 및 대응방침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일기예보 방송, 기상정보 인터넷사이트, 팩스전문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한다.

3.3. 비상경고 발령

- 양산시 통제단장은 필요 시 비상경고를 발령할 수 있다.
 - 119신고, 기상정보, 관련기관 통보 등을 통해서 획득된 재난상황 정보를 판단하여 필요 시 비상경고를 발령한다.
 - 선 비상경고 조치 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비상경고 발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통제단이 가동되어 대중정보 임무 수행자가 지정되면 통제단장의 승인으로 임무전환이 가능하다.
 - 공보(홍보, 대중정보) 임무 수행자가 메시지 작성 등 비상경고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전 파단계는 119종합상황실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 비상경고 메시지(안)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개별 재난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전파되어야 한다.

3.4. 통제단 및 지원기관 관계자 비상통지

- 비상경고 발령이 결정되면 자동 비상경보시스템, 전화, 팩스, E-mail,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제단 및 지원기관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 우선순위에 따라 통지 대상자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여 활용한다.

3.5. 중요 대상에 대한 통지

-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하여 학교, 쇼핑몰, 병원 등 중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비상경고 메시지를 전파한다.
 - 관련 시설 관리기관을 통해 전파할 수 있으며 대상시설 목록을 사전에 작성·활용한다.

3.6. 일반 시민에 대한 비상경고

- 주민들에게 비상경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민방위 경보시설(사이렌, 확성기)
 - 소방차, 경찰순찰차 등의 확성기 및 사이렌
- 소방, 경찰, 지자체, 의용소방대 등 봉사단체가 협력하여 비상경고를 전파한다.
- 재난상황에 따라 주거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상방송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 광범위한 지역(많은 주민)에 재난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 피해(위험) 주민들에게 행동요령, 대비경로 등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비상방송시스템의 활용은 가능한 대책본부장이나 통제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 현장지휘관이 재난문자 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다.
-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에게도 비상경고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7. 비상경고시스템 점검

- 소방서장은 비상방송시스템 등 비상경고 수단과 절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 상황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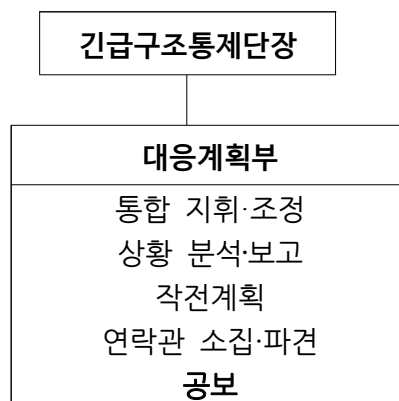
제3절 대중정보 계획(#3)

1. 목 적

-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재난상황 및 주민 보호조치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다.
- 재난상황 및 대응활동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어 사회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질서 있는 대피, 출동·수송통로 확보, 위험 회피 유도 등 긴급구조 대응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필요한 조치이다.

2. 조직 및 운영

- 이 계획은 양산시 통제단 대응계획부(공보(홍보) 임무 수행자)가 주관한다.



- 통제단 가동 전에도 이 기능은 수행되어야 하며, 통제단이 가동되면 통제단장(대응계획부장)의 방침에 임무를 수행한다.
 - 재난의 발생 및 피해상황과 긴급대응활동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상경고 메시지 작성, 대중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기자회견(브리핑) 등
- 양산시 통제단 대응계획부장은 재난발생 초기의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공보(홍보) 담당자(부서)를 통해 대중정보 기능이 적시에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3. 임무수행

3.1. 공보담당

- 양산시 통제단 대응계획부(공보 임무 수행자)는 재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시기에 언론·인터넷매체와 관련기관 등에게 확인된 정보를 제공한다.
- 공보 임무 수행자는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난이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 대중정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3.1.1. 비상경고 메시지 작성

- 시장·군수(통제단장) 등이 주민보호 조치에 관한 비상경고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을 결정하면, 공보 임무 수행자는 비상경고 메시지를 작성하고 통제단장의 승인을 받아 전파한다.
 - 비상경고 메시지는 사전에 작성된 안을 재난상황에 맞게 수정한다.
 - 재난상황이 변할 때에는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파한다.
- 메시지는 문서, 문자, 음성녹음, 영상녹화,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3.1.2. 대중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양산시 통제단 대응계획부장은 대중정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시설을 확보한다.
- 유선·휴대전화 사용이 불가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체 통신수단을 사전 확보한다.
- 대중정보센터는 재난상황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과 협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3.1.3. 재난정보의 수집

- 공보 임무 수행자는 재난의 원인, 피해 현황, 위험 요소, 긴급구조 대응활동 상황, 주민 행동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 수집된 정보는 수시로 확인 및 최신화되어야 한다.

3.1.4. 보도자료 작성 및 정보제공

- 재난피해지역 주민행동요령, 대피 명령에 관한 정보는 다른 정보에 우선하여 전파되도록 한다.

- 보도자료는 재난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작성·배포되어야 하며 기자회견(브리핑)은 예고 시간에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재난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주민(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 있는 경우 특별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 보도·회견자료는 배포되기 전에 통제단장(또는 대응계획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5. 재난지역 현장취재

- 공보 임무 수행자는 현장지휘부(안전 임무 수행자)와 협의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재난지역 현장취재를 허용·안내한다.
 - 안전관리를 위해서 개별·자유 취재가 아닌,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사전계획에 따라 취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2. 대중정보센터

- 대중정보센터는 기자회견(브리핑)을 열고 각 언론사 기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이다.
- 대중정보센터는 양산소방서 회의실이나 재난현장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 후보장소1: 재난현장
 - 후보장소2: 양산소방서 소회의실
 - 후보장소3: 양산시 언론브리핑장
- 대책본부장(통합지원본부장)과 협의하여 대중정보센터를 대책본부에서 설치·운영하고 통제단에서는 협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 대중정보센터 출입(이용) 기자들에게 출입증을 발급하고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보안을 유지한다.

3.3.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발생 위험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 및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재난상황 정보를 판단하여 필요 시 비상경고를 발령하고, 재난 초기 공보(홍보) 담당부서에 정보를 제공한다.

- 대중정보센터가 설치·운영되더라도 비상경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능을 대중정보센터와 함께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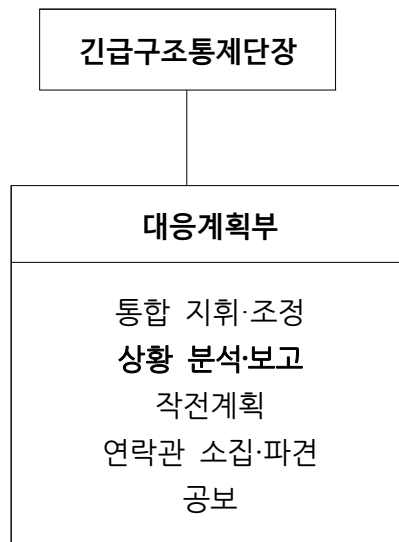
제4절 피해상황분석 계획(#4)

1. 목 적

-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발생 시 피해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보고하고 재난피해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초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계획이다.

2. 조직 및 운영

- 양산시 통제단 대응계획부장의 책임하에 운영된다.
- 상황분석은 재난상황 변화에 따라 수시로 최신화되어야 하고 상황보고서 및 작전계획 작성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3. 임무

3.1. 초기 조사

-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전 위험성 분석 및 초기조사를 실시한다.
- 피해현황에 관한 정보를 접수·수집·조사 및 전파한다.
 - 상황판단회의, 재난상황보고서 작성자, 지원기관, 대중정보센터 등에 전파한다.

3.2. 최초 보고

- 최초보고서는 사전에 작성된 안을 활용하여 작성·보고하며 보고 시점과 작성자 및 보고자(기관)를 분명히 기재한다.
 - 보고서에는 보고 시점에서 파악된 재난발생 시간·장소·원인, 피해현황, 대응조치 사항, 동원자원 현황 등을 포함시킨다.
- 보고서는 소방본부 통제단(방호구조과, 119종합상황실)을 통해서 경남 대책본부장(시·도지사), 소방청 등에 신속하게 보고한다.
 - 보고서 작성 및 전송이 어려울 경우에 구두(무전, 전화)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3.3. 지원요청

- 재난피해상황이 발생지역의 자원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접 자치단체(통제단)나 중앙의 지원을 요청한다.
- 지원요청은 최초 보고와 함께 또는 추가로 별도 요청할 수 있다.

3.4. 정보의 표시

-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정보는 상황판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 정보의 표시는 수기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표출할 수 있다.
 - 변화되는 상황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상황판에 반영해야 한다.
- 대응작전 상황 및 계획을 상황판에 병행 표시할 수 있다.
 - 현장 브리핑을 할 때에는 상황판을 적극 활용한다.

3.5. 기록 및 최종보고

- 기록과 최종보고서 작성은 대응계획부장의 책임하에 작성한다.
- 재난피해, 대응활동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기별 또는 사안별로 기록·정리한다.
 - 기록은 보고서, 일지, 녹음, 동영상, 사진 등을 포함한다.
- 기록을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3.6. 자료 제출 및 확인

- 최종보고서는 소방본부 통제단장, 대책본부장, 소방청, 지원기관 등에 제출한다.
- 재난발생 원인, 대응조치의 적절성 등에 관한 사법·행정적 조사 시 자료를 제출한다.
 - 모든 기록과 자료는 일정기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조, 삭제를 금한다.
 - 당초 기록·보고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기존 기록·보고를 유지한 채로 달라진 사유와 내용을 기록·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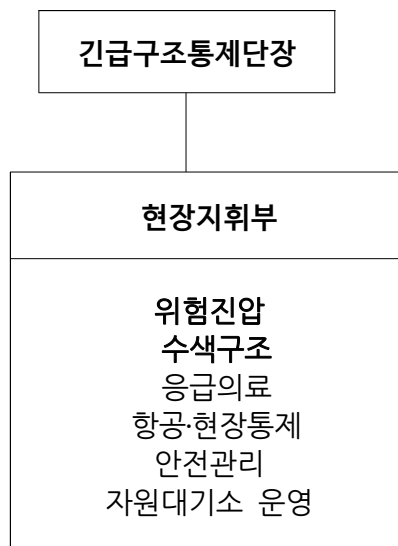
제5절 구조·진압 계획(#5)

1. 목 적

- 구조진압 활동의 조정·통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통제단 현장지휘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재난현장에 대한 탐색구조 및 진압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조직 및 운영

- 이 계획은 양산시 통제단 현장지휘부장이 운영한다.
 - 통제단 가동 전에는 24시간 근무하는 지휘팀장이 운영한다.



- 현장지휘부는 재난상황에 따라 2이상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현장지휘부 내에서 임무단위별로 지휘관을 지정하거나 기존 센터·구조대·구급대장이 임무단위별 지휘관을 맡을 수 있다.
- 현장지휘부장은 최일선 대원 및 지휘관들이 보고하는 재난상황 정보를 취합하여 통제단장(대응계획부장,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한다.
 - 현장지휘부장은 통제단장 및 119종합상황실과 상시 통신체계를 유지한다.

- 재난현장의 위험요소, 피해상황, 대응상황, 임무 진행상황, 추가 필요 자원 등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지휘부장은 보고된 사항 외에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재난상황 정보를 파악하고 통제단장과 119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통제단장의 지시 또는 대응계획부의 대응계획에 따라 목표(임무) 조정, 자원 재배치, 긴급대피 등의 조치를 시행하거나 현장상황에 따라 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3. 임무

3.1. 수색 및 구조

- 119구조대(소방본부 119특수구조대)가 수색·탐색·인명구조활동의 중심이 된다.
 - 119안전센터, 지원기관 인력·장비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 필요 시 현장대응자 또는 주민들의 긴급대피를 결정하고 대피를 명령한다.
 - 주민대피는 대책본부, 경찰 등과 협력 수행한다.
 - 주민대피에 관한 메시지는 대중정보 및 비상경고계획에 따라 전달한다.
- 원활한 긴급구조 대응활동이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교통 통제(소통), 위험구역 출입통제 등에 관해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

3.2. 안전점검

- 현장 대응자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험성(구조물 붕괴, 위험·유해물질 누출, 화학·생물학적 오염 등)에 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안전점검은 대책본부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피해시설 관계자, 민간전문가, 관련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3. 비상발전 및 조명

- 비상 전력공급 및 조명을 제공하는 책임은 한국전력공사(KEPCO)에 있다.
 - 소방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발전기 및 조명설비도 적극 활용한다.
- 무전기(재난안전통신망), 휴대전화, 랜턴 등의 충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4. 가스 차단

- 누출 가스 차단 등 안전조치의 책임은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 있으며, 도시가스에 한하여 안전조치의 책임은 (주)경동도시가스 양산지사에 있다.
- 소방관서는 가스 확산·체류 범위, 누출 지점, 가스 종류 등을 확인하고 대피 안내, 밸브 잠금 등 필요한 초동 조치를 한다.
- 가능한 초동 조치 후에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파악된 정보와 초동 조치사항을 전달한다.

3.5. 긴급 오염방제

- 인명 보호나 긴급구조활동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오염 제거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 필요한 조치는 재난유형별대응매뉴얼(유해화학물질 재난)에 따라 수행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양산시 환경담당부서는 오염방제 활동을 주관하거나 119구조대의 방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책임이 있다.

3.6. 방사능 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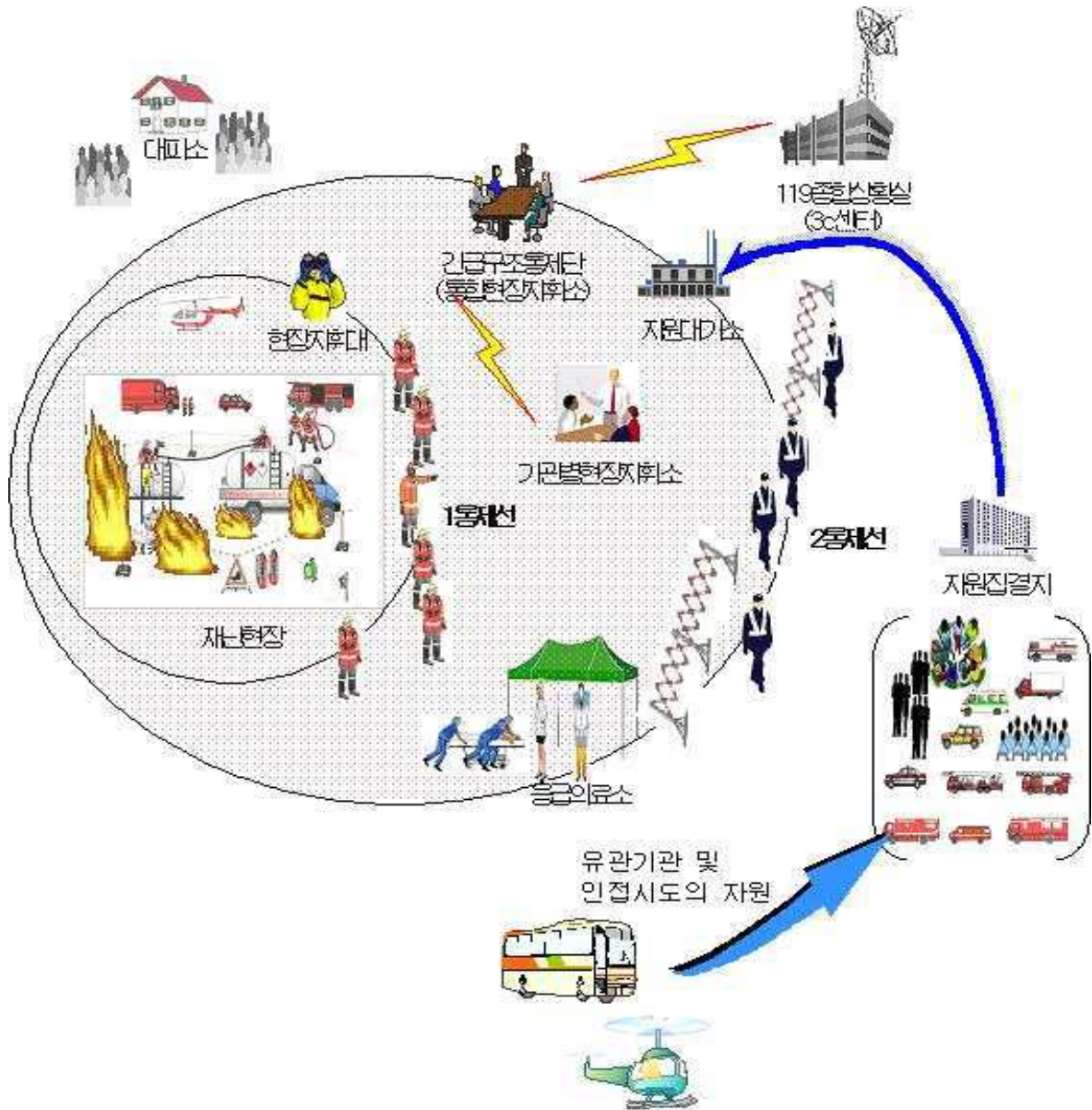
- 원자력발전소 지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책임은 소방본부(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서에 있다.
- 방사능물질 위치 및 영향범위, 방사선량 측정, 통제범위 설정 및 출입통제 등이 초동 조치에 해당된다.
- 출입·교통통제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
- 구체적 임무수행 방법과 절차는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방사능재난)에 따른다.

3.7. 고립주민 지원

- 도로 유실, 폭설, 홍수 등으로 고립된 주민이 음식이나 약품의 보급을 요청할 경우에 적극 지원한다.
- 긴급구조 차원의 지원활동은 자원지원부장 책임하에 수행하고 광범위 또는 대량 또는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가 주관하고 통제단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3.8. 자원집결지 운영

- 자원집결지는 다수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자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동원·관리하고 각 자원의 특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 양산시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에게 자원집결지 운영책임이 있다.
 - 고장 수리, 소모품 보급, 피로회복(휴식), 급식 등의 기능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 재난현장에 대한 접근성과 집결된 자원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를 자원집결지로 지정한다.
 - 사전 지정·관리되는 장소 중에서 또는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지정·공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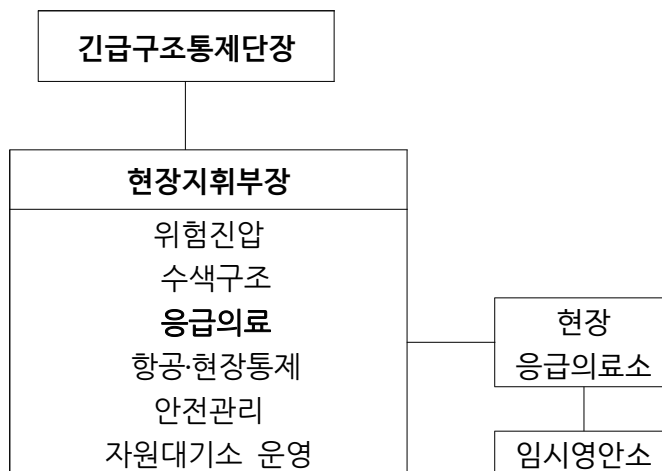
제6절 응급의료 계획(#6)

1. 목 적

- 재난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기술한다.
- 응급의료 관련 긴급구조기관 및 현장지휘소와 지원기관 및 현장응급의료소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조직 및 운영

-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과 능력을 갖춘 양산시 보건소장에게 이 계획의 운영책임이 있다.



- 재난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는 재난응급의료의 책임이 있으며 보건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이 된다.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 재난응급의료체계는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 단계에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및 재난응급의료는 통제단장의 지휘·조정·통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양산시 통제단 현장지휘부장(응급의료업무 수행자)은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전에 임시의료소를 설치·운영한다.
 -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되면 응급의료소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서 통제단장에게 재난응급의료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지휘방침을 받아 응급의료소장에게 전달한다.

- 응급의료 관련 지원기관들은 통제단장 및 응급의료소장의 자원동원 요청에 응해야 하며 지시(임무부여)에 따라 재난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나 응급의료지원센터장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장이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재난응급의료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단체} 〉

책임기관	지원기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의료소 운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소방서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시 보건소장 - 보건소장 부재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응급의료센터장(양산부산대병원) ▷ 지역응급의료기관장(웅상중앙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시 재난응급의료 담당 부서 • 경찰 • 군부대 • 적십자사 •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응급의료센터(양산부산대병원) ▷ 지역응급의료기관장(웅상중앙병원) ▷ 베데스다복음병원

3. 임무

- 현장응급의료소장은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지휘·조정·통제한다.
 - 긴급구조 단계에서 통제단장의 지휘·조정·통제에 따라 재난응급의료 임무를 수행한다.
 - 재난응급의료에 필요한 모든 자원(인력, 구급차, 응급의료 시설·장비)을 동원하고 운용을 조정·통제한다.
- 현장응급의료소의 주요 임무는 재난에 따른 사상자를 분류·처치·이송하고 사망자를 안치하는 것이다.
- 사상자 발생 및 이송현황을 파악하여 통제단장, 대책본부장 등에게 보고한다.
- 사상자 노출, 의료활동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출입통제와 사상자 신원 파악을 경찰에 요청한다.
- 통제단(현장지휘소),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 통신체제를 유지한다.
- 임시영안소를 현장에 설치하여 사망자를 안치할 수 있다.

3.1. 현장응급의료소장

- 의료소장은 부상자 및 구급차 접근성, 연기·유해물질·붕괴 등으로부터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한다.
- 임시의료소를 운영한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임시의료소 인원 및 시설·장비, 사상자, 사상자 분류·처치·이송현황 등을 인계받는다.
 - 인수인계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에 대해서 통제단장에게 보고한다.
- 재난상황, 사상자 발생 및 분류·처치·이송현황, 이송병원(병상) 정보, 사망자 안치가능 시설, 운용 중 및 추가 필요 자원 현황 등 상황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한다.
 - 상황정보를 바탕으로 자원 동원, 임무 배정, 사상자 분산이송 등을 지휘·조정한다.
- 사상자 발생 및 이송(안치) 현황 등 재난응급의료상황 정보를 재난상황보고서 작성자, 대중정보 임무수행자 등과 공유하고, 언론브리핑에 참여하여 발표한다.
 - 국민에게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재난피해자 가족이 가족의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2. 중증도 분류

- 중증도 분류는 예방가능사망률 및 장애율을 낮추고 제한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분류 능력이 있는 전담자^(복장 또는 표찰 착용)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 적색(긴급) : 수분 혹은 단시간 내에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 ▷ 황색(응급) : 수 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환자
 - ▷ 녹색(비응급) :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손상으로 보행이 가능한 환자
 - ※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권고한 후 귀가조치 가능
 - ▷ 흑색(사망)* : 이미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
 - * 사망판정(현장 의사), CPR유보·지연(의료지도 의사)에 따라 분류한다.
- 시신 수습 시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고 수습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다.
 - 한 곳에서 2구 이상의 시신이 발견된 경우에는 번호를 기입한다.
 - 사망자 관련 정보는 임시영안소, 경찰 등과 공유한다.

3.3. 응급처치

- 현장응급의료소장의 지휘·조정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응급의료소 설치 전에는 ^{119구급대, 현장지휘부장 등} 소방서(통제단)에서 임시의료소를 운영한다.
- 긴급, 응급,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 해당 재난상황에서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 비응급환자의 경우 병원 응급실 부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기록, 의료기관 진료 권고 후 귀가시킬 수 있다.
- 응급처치 내용을 중증도 분류표에 기록하여 이송반에 인계한다.
- 사망자(의사의 사망판정, 구조되었으나 사망이 명백한 경우)는 임시영안소에 인계한다.
- 응급처치는 중증도 분류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사망자는 임시영안소 안치 후 또는 안치절차 없이 바로 의료기관(장례식장) 영안실로 이송할 수 있다.
 -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은 구급차로 이송할 수 있다.(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4호)

3.4. 이송

- 이송업무 담당자는 구급차량(탑재장비) 및 구급대원의 능력을 고려하여 이송할 환자를 배정한다.
- 의료기관에 환자를 인계한 구급대는 신속하게 자원대기소(구급차대기소)로 복귀하여 추가 이송을 위해서 대기한다.
- 환자 수보다 많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대기)할 수 있도록 동원(지원) 요청한다.
 - 양산시 통제단(자원지원부)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각 지역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해서 구급차 동원을 요청하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병상)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받아서 이송에 활용한다.
- 원활한 구급차 운영을 위해서 교통통제(소통)를 경찰에 요청한다.
- 이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통제단장(대응계획부)과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한다.
 - 운영 구급차, 사상자 신원, ^{중증도 분류 사항} 이송 환자 및 의료기관(영안실) 등

3.5. 응급의료자원 지원

-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의료 자원을 배정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구급대 등 자원을 추가 요청한다.
 -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 자원대기소에 또는 별도로 구급차대기소를 운영하여 현장(환자 발생^{구조} 지점, 응급의료소)에 구급차들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물리지} 않도록 한다.
- 구급차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배정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 자원봉사자 중 응급의료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파악하여 현장응급의료소에 투입할 수 있다.
 - 필요 시 대중정보센터를 통해 응급의료요원으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 군부대, 민간이송업체, 의료기관 소속 응급의료자원을 적절히 동원·활용한다.

3.6. 임시영안소

- 사망자 신원확인 및 시신 보호를 위한 임시영안소를 설치한다.
 - 사망자 및 가족의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보호(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
- 사망자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고 사망자를 사체포로 덮거나 사체낭에 넣어 안치한다.
- 임시영안소 업무 담당자는 사망자 수·신원, 이송 의료기관(영안실) 등 관련 정보를 양산시 통제단장(대응계획부장)과 응급의료소장에게 보고한다.
- 사망자 소지품은 꼬리표를 붙여 시신과 함께 보관하며, 시신과 분리된 미확인 소지품은 별도로 함께 보관한다.
- 현장 안치가 장기화될 경우 부패 및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본부장에게 냉동시설 확보 또는 합동 임시매장을 건의한다.

3.7. 응급의료 통신

- 현장응급의료소(임시영안소), 통제단장(현장지휘부장), 구급차, 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간 통신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휴대전화기, 현장설치 비상전화기, 소방무전기, SNS, 소방·응급의료정보시스템 단말기, 비상통신체계 참여자(HAM 등) 등을 응급의료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다.

3.8.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구급대응훈련

- 법령에 따른 의무적 훈련으로 불시 또는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재난안전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시행령 제43조의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 응급의료법 제18조, 시행령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5조(의료소에 대한 지원)
- 소방·보건당국이 공동으로 계획·참여·평가*할 수 있다.
 - * 관련기관 협력·지휘체계, 참여자들의 대응 절차·전술 숙련도 등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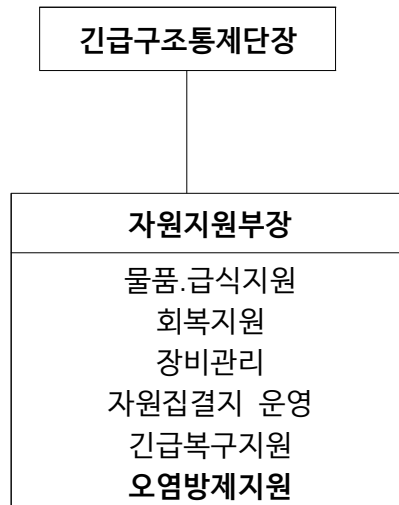
제7절 긴급오염통제 계획(#7)

1. 목 적

- 긴급오염통제 기능의 목적과 임무 내용을 기술한다.
- 통제단의 오염통제 활동 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조직 및 운영

- 양산시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에게 이 계획의 운영책임이 있다.



- 자원지원부장은 통제단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긴급오염통제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자원을 동원하고 관련기관의 임무를 조정한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보건소,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양산부산대학병원, 웅상중앙병원, 군부대(화생방중대), 양산시 수의사협회 등이 관련기관이 된다.
- 대책본부가 가동되면 대책본부 중심으로 오염통제 및 방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임무

- 긴급구조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주민의 생명·재산에 위협이 되는 오염의 제거·통제를 위한 임무 조직을 편성하고 조직별 임무를 조정·통제한다

- 식수, 용수, 음식물 공급대책을 지원한다.
- 방역, 정화 활동을 지원한다.
- 재난지역 유해화학물질·폐기물·오염물질 처리활동을 지원한다.

3.1. 긴급 오염통제

-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오염 외에도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오염을 확인 제거한다.
 - 상수도 시설, 수영장, 목욕탕, 하천, 지하공간(저지대) 등 광범위한 지역의 오염 가능성을 확인한다.
-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방사능, 단순 오물 등) 오염을 구분하여 적합하게 조치한다.
- 오염원 정체 파악, 생성(누출) 지점 확인, 확산 범위 파악, 오염원 생성(누출) 차단, 확산 차단, 오염물 제거 등의 조치를 순차적 또는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한다.
- 출입·통행금지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
- 대응자 및 동원자원에 대한 정화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3.2. 식음료 오염통제

- 식음료 오염통제는 응급환자 발생원인 긴급파악, 응급환자 추가발생 긴급차단, 재난 대응자나 이재민이 먹을 식음료의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긴급조치이다.
 - 수도물, 지하수(우물), 재난현장에서 획득하여 조리할 재료, 재난현장에서 제공되는 식음료 등이 통제 대상이다.
- 식음료 오염통제 기능은 대책본부가 주관하고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 소방서(통제단)는 분석을 위한 긴급 시료채취 및 수송, 식수·용수 공급, 비상 급식, 안전한 식음료 섭취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현장 대응자나 이재민들에게 안전한 식음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 조리·급식을 추진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지원할 수 있다.

3.3. 감염병 통제

- 감염병 통제는 응급환자 발생원인 긴급파악, 추가감염 긴급차단, 재난대응자나 이재민에게 안전한 식음료 제공 등을 위한 긴급조치이다.

- 상수도 시설, 수영장·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동물(곤충 포함)이 통제 대상이다.
- 대책본부가 주관하고 양산시 보건소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 소방(통제단)은 감염(의심) 환자 이송을 주도하고 긴급 시료채취 및 수송, 식수·용수 공급, 비상 급식, 격리시설 운영, 감염예방요령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경찰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통제, 질서유지 등을 지원한다.
- 구급대원 등 대응자들에 대한 감염방지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4. 환경오염 통제

- 환경오염통제 기능은 오염원의 정체 및 생성원인 긴급 파악,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 차단, 오염확산 차단, 원활한 긴급구조활동 등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 수계, 식생(植生), 대기가 환경오염통제의 대상이 된다.
- 대책본부가 주관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 환경부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 소방(통제단)은 초동 긴급조치(측정, 통제선 설치, 유출·확산 차단 등)를 수행하고 오염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수송, 방제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환경오염으로 긴급하게 주민대피가 필요할 경우 대피명령을 발령하고 대피를 안내·지원한다.
 - 경찰은 출입·이동통제, 주민대피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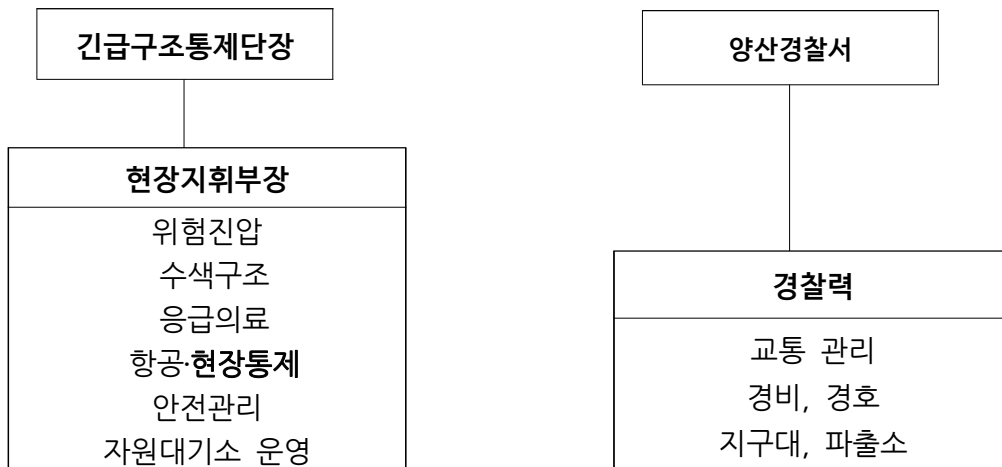
제8절 현장통제 계획(#8)

1. 목 적

-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대응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재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치안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조직 및 운영

- 양산시 통제단 현장지휘부장 책임하에 경찰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실질적인 통제활동은 재난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장이 수행한다.
 - 성공적인 현장통제를 위해서 통신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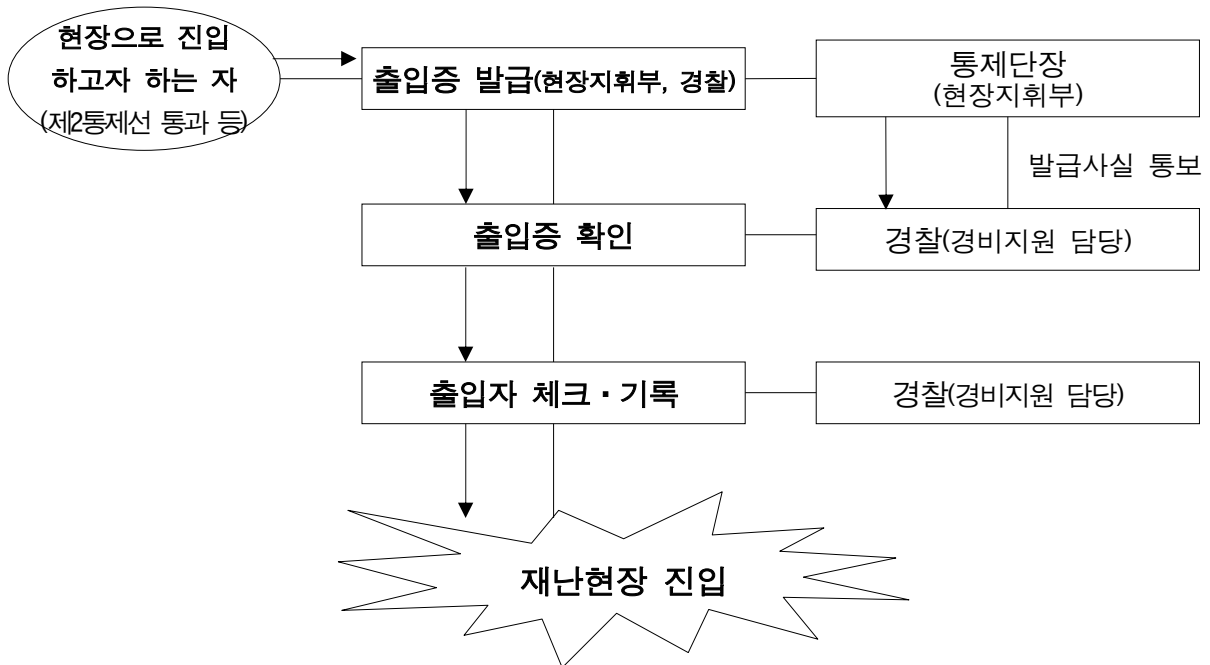
3. 임무

- 비상경고(기능별 #2) 계획을 지원한다.
- 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 통제단(현장지휘소), 현장응급의료소, 임시영안소 등 주요 시설 및 자원과 관계자를 보호한다.
- 구조통로 확보 등을 위한 교통 소통·통제를 실시한다.
- 긴급대피(소개) 절차를 지원한다.

- 필요시 위험구역에 대한 통행금지를 실시한다.
- 광범위한 재난지역의 탐색구조 및 경상자 이송업무를 지원한다.

3.1 현장통제 운영

- 치안 질서유지·회복, 재난대응 기능 보장, 원활한 긴급구조활동 지원 등을 다음의 절차를 실행한다.
 - 재난피해 지역·시설에서 절도·약탈 방지
 - 무단 출입자에 의한 긴급구조활동 방해 차단
 - 위험구역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 긴급구조·구호활동을 위한 이동로 확보(교통 통제)
 - 대피소 내 질서 유지
- 특별한 통제가 필요한 시설(지휘소, 응급의료소, 임시영안소, 대중정보센터 등)에서는 출입증을 발급하고 출입자를 확인·기록한다.
 - 신분증, 제복, 표찰 등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정기·수시 순찰을 실시한다.



- 고립자 확인, 대피 안내 및 대피여부* 확인,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수색활동, 사상자 신원확인 등을 대책본부 및 통제단과 협력하여 수행한다.

- * 강제 대피조치가 필요할 때나 교정시설 수형자를 대피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도 임무의 일부로 수행할 수 있다.
- 분실(습득, 방치)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인을 확인하여 반환하는 기능도 필요하다.
 - 통제단 대응계획부장은 보관소의 위치와 연락처를 주민에게 홍보한다.

3.2, 교통통제

- 긴급출동·자원수송 통로 확보, 질서유지를 위한 통행금지, 위험지역·긴급구조활동구역 출입통제,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이다.
- 진입통제가 필요한 지역은 통제단장이 결정하고 경찰에 통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통제 사실을 대책본부장(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다.
 - 통제의 이유·구역·시간과 적절한 우회도로를 표지판으로 안내한다.
- 통제 구간에 대해서는 정시·수시 순찰을 실시한다.
- 필요 시 철도는 물금역,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지하철은 부산교통공사에 요청한다.
- 항공기가 재난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산지방항공청(경남 등 7개 시도 관할) 및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 요청한다.
- 방치·고장·파손 차량이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이동(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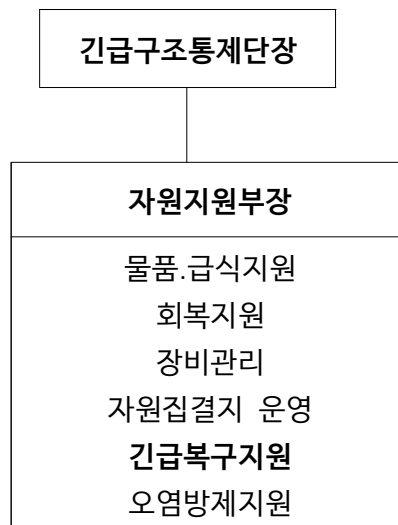
제9절 긴급복구 계획(#9)

1. 목 적

-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2차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조직 및 운영

- 이 계획은 양산시 통제단 자원지원부장 책임하에 운영된다.



- 자원지원부장은 재난피해 및 긴급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복구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을 투입하고 임무를 배정·조정한다.
- 긴급 및 초기 복구활동은 소방관서(통제단)가 선조치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복구활동은 대책본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임무

- 중장비를 사용한 대규모 구조작업을 지원한다.
- 긴급구조를 위한 출동 및 자원의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의 자원동원 및 임무를 지원·조정한다.

- 2차 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진단 등 기술 공학적 정밀검사를 지원한다.
- 긴급구조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다.
- 긴급복구활동 진행 시간, 장소, 협조사항 관련 정보는 대중정보 기능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파되도록 한다.

3.1. 재난현장 긴급복구 - 양산시

- 소방활동 및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요소(구조대상자 주변·상부 적치물 제거 / 출동·이송 통로, 소방용수, 자원대기 장소 등 확보)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 긴급구조활동에 관련된 긴급복구활동은 통제단장의 지휘(요청)에 따르고 긴급구조 단계 이후에는 대책본부 주도로 복구활동을 진행한다.
 - 통제단(소방서)은 대책본부의 복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나 재난대응 차원이 아닌 영구 개선·복구활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3.2. 자원집결지 및 자원대기소 설치 - 소방

- 긴급복구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관리하고 각 자원의 특성·기능에 적합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원집결지(자원대기소)를 운영할 수 있다.
 - 긴급구조 관련 자원집결지(자원대기소)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복구 관련 자원 집결지(자원대기소) 운영은 대책본부와 협의한다.

3.3. 접근통제 및 수송로 확보 - 경찰

- 긴급복구 자원이 재난현장으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경우 재난현장(자원집결지/자원대기소) 부근 또는 접근통로로 활용되는 도로로 일반차량이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 통제요원, 통제선, 바리케이드, 안내판 등이 통제에 적절히 투입되어야 한다.
-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불법주차, 방치, 고장, 파손)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 통제단(자원지원부장)과 통신체계를 유지하면서 긴밀하게 협조한다.
 - 긴급구조 단계 이후에는 대책본부와 협력하여 통제한다.

3.4. 비상전력 공급 - 한국전력

- 현장 대응자나 주민의 감전, 전기 화재 등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우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구조현장, 지휘소, 대피소 등에 대한 비상조명, 비상전력 공급 등을 지원한다.
 - 현장에 임시 배선 및 안전관리 조치를 포함한다.
 - 이동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 소음, 진동, 배기가스 등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민간업체 발전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에 비용을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다.
- 긴급구조 단계에서는 통제단(자원지원부장), 그 이후에는 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비상전력 공급 임무를 수행한다.

3.5. 가스차단 및 안전진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 누출^{화재}·확산 진행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차단 등 조치를 우선 실행한다.
- 가스 누출 지점, 확산·체류 범위, 가스시설의 안정성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 필요 시 대피시설 등에 대한 비상 가스공급을 실행한다.
- 긴급구조 단계에서는 통제단(자원지원부장), 그 후에는 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활동한다.

3.6. 재난지역 및 건물 안전진단 - 전문기관^{단체}, 전문가

- 2차 사고 방지와 긴급구조활동 시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한다.
- 안전진단반은 가능한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긴급구조 단계에서는 통제단(대응계획부장), 그 후에는 대책본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3.7. 통신 - KT

- 현장지휘소에 긴급대응 업무용 전화기를 설치한다.
- 대피소나 통신두절 재난지역에 임시 공중전화기를 설치한다.
- 긴급구조 단계에서는 통제단(자원지원부장), 그 후에는 대책본부와 협력한다.

제10절 긴급구호 계획(#10)

1. 목 적

- 재난피해자와 긴급대응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의 심신 보호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2. 조직 및 운영

- 이 계획은 양산시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의 책임하에 운영된다.
 - 대책본부, 봉사단체, 경찰, 군부대 등과 협력·수행되어야 한다.



3. 임무

- 이재민,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인력에게 식사, 공중위생, 세척, 대피공간(장소) 등을 제공한다.
- 재난심리상담(외상후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 구호물자 긴급 수송과 이재민 긴급 이송을 지원한다.
- 고립자, 이재민 등에 대한 의식주, 약품 등을 긴급 제공한다.
- 긴급구조 단계에서도 대책본부가 주관하고 통제단(소방서)에서 지원한다.
 - 생명·신체 위험에 직면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제단(소방서)에서 우선 직접 구호한다.

3.1. 대피 수용

- 대피명령과 대피요령, 대피경로(장소)에 관한 정보는 비상경고 및 대중정보 기능으로 전파한다.
- 대책본부(양산시), 군부대, 경찰, 소방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민대피를 지원할 수 있다.
 - 경찰은 직접적인 수송 외에 대피대상지역 잔류자(대피 곤란자) 확인, 교통통제, 수송차량 안내 등의 역할을 맡는다.
- 대피소 설치·운영은 대책본부가 주관하고 통제단(소방서) 등이 협력한다.
 - 대피소는 유해가스, 범람,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 사생활 보호, 공중·개인위생 확보, 물자 공급 편의성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 대피소에서 실종자 신고, 재난피해자 등록, 사상자 신원확인, 재난심리상담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 재난피해^{우려} 지역의 의료기관 환자, 산후조리원 산모와 아기, 수용시설의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동등 수준의 시설로 이동^(분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구급차나 내부공간이 충분한 차량이 동원되어야 하고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3.2 구호자원 지원

- 비상식량, 식수 등 구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분배하기 위해서 구호자원집결지와 구호자원대기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통제단 자원지원부장이 운영하는 자원집결지와 자원대기소를 구호자원집결지나 구호자원대기소로 이용할 수 있다.
- 구호자원의 도난 방지,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질서 있는 분배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찰의 지원을 요청한다.
 - 분배 장소는 이재민들의 접근성, 2차 피해 가능성, 주차·물자적재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대중정보·비상경고 절차를 통해서 공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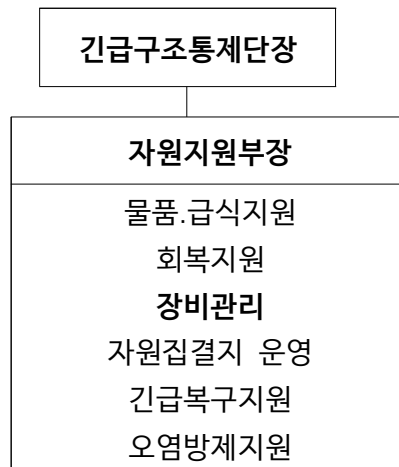
제11절 재난통신 계획(#11)

1. 목 적

- 긴급구조기관, 지원기관, 통제단(지휘소), 응급의료소, 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 등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지휘체계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통신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직 및 운영

- 이 계획은 양산시 통제단(대응계획부장.자원지원부장), 양산시 재난안전상황실장 및 재난안전통신망 담당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된다.
-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원기관^{단체}에 대해서는 통신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3. 임무

-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양산시 통제단 및 관련기관의 상황실(112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등)은 재난통신 기능 수행의 핵심이 된다.
- 대체 보조통신 수단이 평소 준비되어야 하며 통신불능 시 활용되어야 한다.
- 재난통신망 단말기를 충전·분배하고 통신체계를 유지·점검한다.
- 음성통화와 함께 가능한 화상통화^{회의}와 데이터 통신이 함께 제공되도록 한다.

3.1.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통신체계

- 통신 중계, 일괄 전파, 통신 우선순위 설정, 비상 경고 등을 통해서 재난통신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한다.
- 유사 시를 대비하여 평소 재난통신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원기관과 재난안전상황실과의 통신체계도 점검해야 한다.

3.2. 재난통신 보조수단

- 추가 설치 통신회선, HAM, 이동통신 기지국^{차량}, 위성통신·인터넷, 예비용으로 전환한 무전기(VHF, UHF) 등이 보조수단이 될 수 있다.
- 보조수단을 유사 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점검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3.3. 대체 119상황실 통신

- 대체 119상황실에는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준하는 또는 기본 기능(119신고 접수, 출동 지령,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등) 수행이 가능한 통신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4. 현장지휘소 통신

- 무선통신(휴대전화, 재난안전통신망, 무전기 등)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KT 긴급 설치} 유선전화를 설치하여 이용한다.
- 소방서 지휘차량의 무선중계기를 이용하여 무선통신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사(SK, KT, LG U+) 이동기지국 차량을 재난현장에 운영(설치) 요청하여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5. 대중정보센터 통신

- 기자, 통제단 공보 임무 수행자, 119종합상황실, 재난안전상황실, 대책본부(통합지원본부), 현장지휘소, 언론사 간의 원활한 통신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중정보센터로서 기능할 수 없다.
 - 통신수단^(매체, 단말기) 준비 외에 임무별 담당자 연락처가 준비되어야 한다.

3.6. 대피소 통신

- 대피소에 통신이 두절되면 고립되고 대피소로서 기능이 저해된다.
- 개인 휴대전화 충전 지원, 유선전화기 설치, 운영 담당자 업무용 전화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
 - 통신 두절을 대비하여 대체 통신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3.7. 통신 원칙

- 통신체계는 365일 24시간 유지되어야 한다.
- 재난통신은 관계자 외 대상자에게 보안을 유지한다.
 - 확인·정제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에 따른 혼란 초래, 개인정보 유출, 재난상황 정보의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재난 시 통신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a. 긴급구조
 - b. 긴급복구
 - c. 긴급구호
 - d. 기타 재난대응활동
 - e. 민간 통신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제3장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1. 자연재난 기본계획

1.1. 홍수(집중호우)

구 분	대 응 방 침
복합성 및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게릴라성 집중호우 증가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토지이용 극대화 및 산업화로 기존 물의 흐름이 왜곡되어 침수 및 수난사고 지역 예상대응 한계 ○ 대응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음 ○ 수난구조중심의 자원 및 활동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된 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및 침수지역 배수지원, 강풍지역 낙하물 제거, 기타 안전조치활동 전개 • 수난구조시 물의 흐름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필요장비 활용 등 사전 안전조치 절대 필요
대응활동 전략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재난 특성, 구조장비 관리 등 교육 - 수중구조, 도시탐색구조 등 구조전술 훈련 ○ 기상 특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동장비 점검 - 위험지역 현지 확인 - 필요 시 소방력 전진 배치 등 ○ 피해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 철저, 이동 간 소방차량 전도, 침수, 미끄러짐 등 유의, 현장 투입 전 위험 평가, 위험 제거·회피 조치 등 - 고립자 수색(차량, 도보, 드론, 헬기, 수색견) - 수난구조, 붕괴구조, 위험지역 대피조치 등 - 피해규모 등을 고려, 대응단계 선제적 발령 및 지원기관을 동원하여 통합 지휘·조정·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제단 가동

1.2. 태풍

구 분	대 응 방 침
<p style="text-align: center;">복합성 및 위험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예측 이상의 강력한 태풍피해 발생 빈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하천 범람 및 역류, 제방 유실, 해일 피해 등 복합적 피해가 광역적으로 발생함. - 도시 토지이용 극대화 및 산업화로 기존 물의 흐름이 왜곡되어 침수 및 수난사고 지역 예상대응 한계 - 산간 계곡부의 산사태로 인한 유목 및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피해 및 도로 유실 피해 등 복합적 피해 발생 ○ 대응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피해 발생은 수 개의 시·군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나타나는 경우 많아 대응자원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지 않은 인접 시·군의 소방자원 및 유관기관 자원의 적극적인 지원협력 필요 ○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피해 : 농경지, 도시, 라이프라인 시설 - 해안시설 : 해일로 인한 선박의 파손·유실, 기름유출 등 오염사고 - 주요공공시설 : 도로의 유실, 교량파손, 하천범람, 제방붕괴, 항만시설 파손, 어항파손, 상하수도시설 피해, 대규모 정전 발생
<p style="text-align: center;">대응활동 전략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재난 특성, 구조장비 관리 등 교육 - 수중구조, 도시탐색구조 등 구조전술 훈련 ○ 기상 특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동장비 점검 - 위험지역 현지 확인 - 필요 시 소방력 전진 배치 등 ○ 피해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 철저, 이동 간 소방차량 전도, 침수, 미끄러짐 등 유의, 현장 투입 전 위험 평가, 위험 제거·회피 조치 등 - 고립자 수색(차량, 도보, 드론, 헬기, 수색견) - 수난구조, 붕괴구조, 위험지역 대피조치 등 - 피해규모 등을 고려, 대응단계 선제적 발령 및 지원기관을 동원하여 통합 지휘·조정·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제단 가동

1.3. 폭설

구 분	대 응 방 침
<p style="text-align: center;">복 합 성 및 위 험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설 빈도는 감소했으나 강설량 및 시간당 강설량의 증가로 지역적 고립, 교통장애 등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정도도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 등 적설 압력에 약한 구조물의 붕괴 ○ 산악지역 조난자에 대한 구조활동은 산악의 광범위한 지역의 수색, 폭설지역 구조대상자 이송, 통신장애 등 많은 구조활동 곤란성 내재 ○ 고립지역에서의 응급환자 발생 또는 사고발생 시 현장접근 및 환자 이송로 미비로 긴급대응 곤란 ○ 폭설재난은 산악지역 조난, 교통두절에 의한 고립, 적설압력에 의한 건물, 구조물의 붕괴 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지역 눈사태 또는 신체 한랭손상 등에 의한 등산객의 조난사고 - 도로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의한 차량정체, 지역적 고립, 빙판길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등
<p style="text-align: center;">대 응 활 동 전 략 전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재난 특성, 구조장비 관리 등 교육 - 붕괴구조전술 등 훈련 ○ 기상 특보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동장비 점검 - 위험지역 현지 확인 - 필요 시 소방력 전진 배치 등 ○ 피해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 철저, 이동 간 소방차량 미끄러짐, 충돌 사고 등 유의, 현장 투입 전 위험 평가, 위험 제거·회피 조치 등 - 지자체 등과 협력, 출동로 우선 제설 - 고립자 수색(차량, 도보, 드론, 헬기, 수색견) - 붕괴구조, 위험지역 대피조치 등 - 피해규모 등을 고려, 대응단계 선제적 발령 및 지원기관을 동원하여 통합 지휘·조정·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제단 가동

1.4. 지진

구 분	대 응 방 침
<p style="text-align: center;">복 합 성 및 다 양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난은 다양한 피해형태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붕괴, 매몰, 추락, 화재, 폭발, 해일, 침수, 화학물질 누출, 원자력 사고, 기타 전기가스 사고 등 ○ 지진재난을 위한 장기간의 대응활동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자원의 부족에 대비한 사전계획 필요 - 추가자원의 지원과 효율적 분배에 대한 상세한 검토 필요 -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한 긴급복구와 희생자의 구호대책 고려 ○ 지진재난대응의 복합성에 따른 다양한 대응활동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 매몰에 따른 탐색/구조활동, 해일, 침수피해에 따른 수난구조 - 화재진압 및 폭발에 따른 화재진압활동 - 화학물질누출, 방사능 누출에 화학물질처리 활동 ○ 대응현장의 광역화로 대응자원 부족과 대응활동 제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의 파괴로 소방용수의 부족, 출동로의 제한, 통신장애 발생 - 의료시설, 대피시설의 파괴로 긴급구호활동 장애
<p style="text-align: center;">대응활동 전략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재난 특성, 구조장비 관리 등 교육 - 붕괴구조전술,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등 훈련 ○ 피해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 철저, 이동 간 소방차량 추락, 전도 등 유의, 현장 투입 전 위험 평가, 위험 제거·회피 조치 등 - 고립자 수색(차량, 도보, 드론, 헬기, 수색견) - 붕괴구조, 위험지역 대피조치 등 - 피해규모 등을 고려, 대응단계 선제적 발령 및 지원기관을 동원하여 통합 지휘·조정·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제단 가동 ○ 위험 지역·대상별 대응전략 ○ 다양한 자원을 효율의 조직화로 적합한 전략과 전술 적용 필요 ○ 재난상황 유동성에 따른 예상하지 않은 대응활동 장애사항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활동의 제한성을 예상하여 충분한 보완대책 수립 - 수립된 대응계획에만 의지하지 말고 재난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전계획을 수정하여 실행하는 등의 신축적인 태도 필요

2. 사회재난 기본계획

2.1. 붕괴사고

구 분	대 응 방 침
붕괴 유형별 생존가능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캔틸레버형(Cantile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충격에 의하여 한 쪽 벽판의 갑작스러운 탈락으로 발생 - 구조대상자 생존가능 공간은 각 층 골조부나 튼튼한 가구류 부근에 형성 ○ 경사형(Lean-to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벽이 무너지거나 한쪽 바닥판의 분리로 발생 - 대상자 생존가능 공간은 붕괴 결과로 생긴 삼각형 모양의 빈 곳에 형성 ○ 팬케이크형(Pancake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발생 - 구조대상자 생존가능 공간은 기둥, 대형시설 부근의 작은 공간에 형성 ○ V형붕괴(V-shaped Collap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판이 중앙부 지지력 결함 또는 과부하로 인해 중앙 붕괴로 발생 - 구조대상자 생존가능 공간은 V형태 잔해의 양쪽 아래 벽 부분에 형성
대응활동 전략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붕괴 가능성 안전점검 후 구조작업 ○ 붕괴징후 측정장비 설치 및 징후 감시 전담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붕괴징후 시 신속한 대피경보 발령 - 대피 경로 및 장소 사전 지정 ○ 119구조건, 정밀 탐색장비 적극 활용 ○ 붕괴, 낙하물 위험반경 내 접근 통제 실시 ○ 건설 중장비 적절한 활용 ○ 평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붕괴사고 특성, 구조장비 사용법 및 관리 등 교육 - 붕괴구조전술,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등 훈련 - 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 그룹(예비 진단팀) 형성 ○ 피해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 철저, 출동 중 교통사고 유의, 현장 투입 전 위험 평가(안전진단), 위험 제거·회피 조치 등 - 필요 시 붕괴위험 시설 내 또는 위험반경 내 긴급 대피명령 - 피해규모 등을 고려, 대응단계 선제적 발령 및 지원기관을 동원하여 통합 지휘·조정·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제단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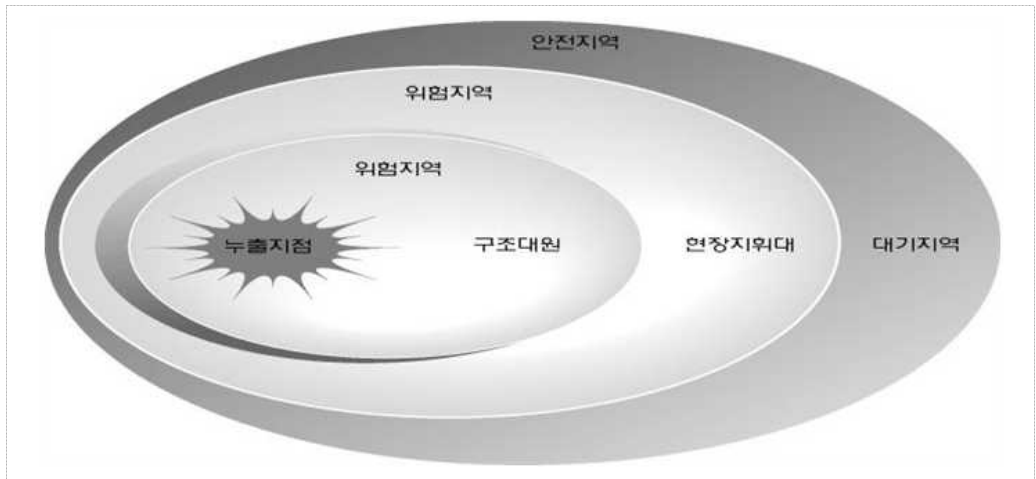
2.2. 가스사고

구 분	대 응 방 침
<p>위험성 및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누설과 가스 자체의 연소로 크게 구별된다. ○ 가스 누설은 체류 지역 및 유동 범위의 확정이 어렵고, 인화에 의한 폭발위험, 산소부족, 중독위험성이 크다. ○ 특히 LPG는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낮은 곳에 체류하는 폭발 혼합기를 형성하기 용이하다. ○ 갑작스런 2차 폭발로 인하여 대원 작업 위험 발생 우려 ○ 폭발 충격파에 의하여 진입하는 대원 작업위험 발생우려 ○ 분출화재 및 비산물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구조 및 대원 작업 시 위험 발생 우려 ○ 가스누출 장소에 관찰부대를 배치할 때에는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무인 방수 고려 ○ 경계구역내외의 통제를 확실하게 함 ○ 폭발충격으로 인하여 폭원(爆源)에 근접한 고체물 (용기 혹은 건축(建屋) 등)을 파괴하는 효과 ○ 폭발가스의 급팽창에 의거하여 상기에 의한 파편을 날려버리는 추진효과 ○ 동시에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어 충격파를 만들고, 이것이 원거리까지 영향을 주는 충격효과 ○ 폭탄형식의 폭발 : 폭탄과 같은 매우 강고한 용기 중에 폭발이 일어나면, 용기를 파괴하고, 그것을 파편으로써 주위에 날려 버리기 때문에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폭풍의 효과는 원거리까지 미치지 않는다. ○ 핵폭발 형식의 폭발 : 2차적으로 파편 효과가 수반한다. ○ 가스 및 분진 폭발 : 가스나 분진은 고압상태가 아닌 한 파편효과 (최초의 파편효과)가 적고 충격파에 의한 거리효과의 파괴 비중이 크다.
<p>대응활동 전략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출·체류로 인한 폭발·화재,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시 파괴(붕괴)·비산 및 산소부족·복사열, 중독, 질식, 피부·호흡기 등 화학손상 등 - 폭발로 인한 파괴 효과에 의하여 화재 및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실내 폭발인 경우, 대원 안전사고에 요주의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여부(인원수),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대피 필요성) - 가스종류(연소·폭발성, 유독성, 비중), 누출 지점·양, 확산범위, 체류공간 - 풍향, 풍속, 건축물, 지형 등을 고려한 확산 방향 및 범위

- 붕괴 여부 및 추가붕괴 가능성, 잔류·미연소·추가누출 가스에 의한 2차 폭발 가능성

○ 착안사항

- 장시간 경계·냉각 목적 관창 배치 시 무인방수 적극 고려
- 2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재난의 확산 방지에 주력
- 구조활동에 있어 시간적 제약 및 날씨의 제약이 큼
- 2차 폭발위험 시 복사열, 화재, 붕괴, 비산물 등 고려 인원 투입 및 경계
- 2차 폭발 점화원(정전기, 전기·마찰 스파크, 불꽃, 고온체 등) 통제
- 위험반경 내 출입통제 또는 대피 명령(비상경고, 대중정보)
- 빈 용기(탱크) 내 잔류가스(혼합기) 폭발로 인한 강력한 충격파·파편 유의
- 환기 조치 시 폭발 유의(창문개방 시 마찰 스파크, 대원 복장 정전기, 송·배풍기 가동 시 전기 스파크 등)
- 분무 주수 적극 활용(정전기 방지, 체류 가스 제거^{확산(희석), 포집(용해)})
- 피해규모 등을 고려, 대응단계 선제적 발령 및 지원기관을 동원하여 통합 지휘·조정·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제단 가동
-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을 구분하고 보호장비 착용 후 임무수행



2.3. 대형화재

구 분	대 응 방 침
<p>주요 시설 및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유통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장, 고층 건물,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 주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 화재특별경계험지구, 시장, 취약주거시설 밀집지역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운집하여 무질서한 관계로 화재 시 피난의 어려움이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내부상황 판단이 곤란하고, 출입구로부터 화연이나 농연이 분출하는 등 예기치 못하는 상황 발생 ○ 공기의 공급이 제한되고, 불완전연소로 다량의 연기 발생 ○ 피난·대피의 곤란으로 대량 인명피해 및 오염의 우려 ○ 피난대피 및 유도, 인명검색 등에 많은 시간 소요 ○ 폐쇄 공간에서의 소방 활동으로 소방력 분산 및 무선통신 장애 발생 ○ 공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주수효과 미흡
<p>대응활동 전략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로 인한 구조물 약화·붕괴 - 연기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발행 - 복사열, 바람, 비화로 인한 연소확대 - 상승하는 화염·열기로 인한 상층부 연소확대 - 다수인원 대피 시 무질서(패닉)로 인한 압사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피해 여부(인원수), 추가 인명피해(고립자) 가능성 - 건축물 전체·부분용도(업종, 구조도면), 규모, 수용인원, 관계자 - 방재실 위치, 소방·피난시설 정상작동 여부, 전기·가스·위험물 현황 - 건물의 상세도면 및 각층별 용도, 입주현황에 대한 도면을 확보하고 내부 방화구획, 소방용설비 등의 설치위치 및 작동유무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화점, 연기로 인한 오염 범위 및 119구조대상자의 상황 등을 도면에 표시하여 지휘 통제에 활용 - 투입하는 대원 인원수, 시간(교대시간), 장소 - 방화구획 여부(유효성)과 개략적 연료량 및 위치 - 공기호흡기(충전용기) 소요량 및 공급방안, 대원 교대·회복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용수 확보(소화전 수·위치·수압, 소방차량 수 및 접근성, 대체용수 등) ○ 검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우선순위(인명구조, 화점 공격, 연소확대 방지) - 불완전연소 가스 체류로 인한 폭발 가능성 - 공기공급 제한상황에서 급격한 환기로 인한 폭발적 연소 가능성 - 열기 축적으로 인한 전면적 동시 연소 가능성 - 약화된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 - 전진 지휘소 및 자원대기소 운영 필요성 - 연기확산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대비 필요성 - 조명, 배연, 통신, 교통통제, 현장 출입자 통제, 전기·가스차단 등 필요성 - 피해규모 등을 고려, 대응단계 선제적 발령 및 지원기관을 동원하여 통합 지휘·조정·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제단 가동 ○ 고층건물 재난진압활동 특성 고려하여 필요한 참모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기지 : 재난건물 바깥에 설치되어 현장도착 자원의 건물진입을 통제하고 건물외부상황에 대한 정보를 내부에 전달 - 로비통제 : 건물내의 로비에 위치하여 계단, 엘리베이터등 상부진입수단을 조정 - 계단운송 지원 : 엘리베이터 사용불가능시 계단을 통한 진압장비의 운송을 지원 - 진입대기소 : 재난층 2층 아래층에 위치하며 재난층으로의 진입대원을 통제하고 교대인원이 휴식, 장비교체, 점검의 공간제공 ○ 지하층에서의 배연, 조명, 통신기능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직편성 ○ 조직적인 현장지휘대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휘대장의 철저한 진압대원 통제기능 발휘 - 현장대원의 독자적 행동 엄금으로 대원의 안전확보 - 명확한 진입통제 및 무선통제수단 확보
--	---

2.4. 화·생·방사고

구 분	대 응 방 침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생·방물질 수송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발생 - 화학물질 이송 중 교통사고, 보관탱크 관리 미숙으로 인한 폭발 등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생 - 테러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고의적 활동에 의해 유출가능성 있으며 이 경우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병행하면서 대응활동 전개 ○ 방사능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발전소, 취급시설, 연구시설 사고 - 자연우주물체(소행성) 추락, 인공우주물체(위성, 우주정거장, 추진체) 추락 - 핵물질 또는 방사성물질의 분실, 누출, 비정상취급(밀수, 도난), 운반사고, 방사능누출을 포함하는 화재 등의 사건 - 원자력추진 인공위성의 대기 진입시의 추락사건, 외국 또는 미등록 방사선원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 오염 등의 방사선 사고 - 핵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을 이용한 테러
대응활동 전략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 인명피해 및 사회적 혼란 초래 가능 - 인명·시설의 직접적 피해 외, 주변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오염) <small>대기, 수계, 토양, 식생 등</small> - 오염된 지역 및 대상자에 대한 장기적인 악영향 - 긴급구조 및 방제활동에 고도의 전문성 요구 - 화재발생으로 연결되거나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음 - 위험물이 누출된 경우 발생된 유증기에 의해 화재가 발생 하거나 체류된 지역에 점화원이 가해질 경우 폭발성 화재 발생 - 유독물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대규모의 인명피해 또는 대기환경의 피해 유발 가능성 있음 - 유출되어 기화된 유독물은 주변지역으로 급속 확산 가능성 있음 - 위험지역으로 예상되는 경우 긴급대피활동 필요 - 주변 하천에 유출 시 상수도 및 각종 용수의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킴 ○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ll>화학적, 물리적 성상</small> 오염원의 종류, 지점, 확산 범위(예상 방향·범위), 제독·방제 요령 - 관리 주체(연락처, 허가사항, 안전관리자, MSDS, 관계기관 등) - 검측·보호장비의 적정성 - 교대조 편성 및 임무* 분담 <p style="text-align: center;">* 인명구조, 긴급차단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화생방에 노출되는 대응활동</p>

	<p>을 해야하는 경우 임무별 필요최소 인원으로 팀을 편성하고 각 팀의 활동 시간을 최소화(노출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된 인원·장비의 오염 여부 및 제염(폐기) 방안 - 주변 동·식물의 상태변화 여부 <p>○ 검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적 공격(테러), 2차·3차 공격(피해발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 및 각 주관기관 주도하에 대응 - 상태변화(액화, 기화, 경화, 비산) 및 가스발생 가능성 - 피해 및 피해우려 지역(시설) 주민에 대한 대피명령 필요성 - 피해규모 등을 고려, 대응단계 선제적 발령 및 지원기관*을 동원하여 통합 지휘·조정·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제단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의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 적극적 지원 및 공동대응 요구 <p>○ 방사능물질 취급시설의 화재 또는 인사상 사고의 처리시에는 반드시 방사능사고 대응활동 검토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 대한 방사선피폭 여부 확인 및 통제선 설치 - 방사선보호복 및 관련 보호장비 착용 후 대응활동 - 피폭구역 내에서 허용된 대응활동 임무만 수행 - 피폭된 사상자는 방사선환자 처리능력이 있는 병원에 수용 - 현장활동 중 사용된 보호장구 등 피폭된 물건을 수거 후 폐기하거나 안전 조치 필요 - 주변 수질, 대기환경에 대한 오염통제활동 필요
--	--

2.5. 압사사고(Crowd Crush)

구 분	대 응 방 침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세계 각지에서 끊임없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행사장, 경기장, 문화공연장,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 사회심리적 위험성(영국 Keele 대학 교수 클리퍼드 스토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산업, 소셜미디어 등 대중매체 발전으로 쉽게 다중밀집 가능 - 만원 지하철, 혼잡한 행사장 등 밀집상황에 익숙하여 위험성 인지 지체 - 북적이는 공간·장소에서 느낄 수 있는 일체감을 즐기는 인간 심리 ○ 군중 물리법칙(Crowd Phys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 시간(짧을수록 위험), 점유 공간(작을수록 위험), 집단행동을 이끄는 군중의 인식, 군중이 만들어내는 압력이 상호작용하여 위험 발생 - 군중은 물리적 압력과 에너지에 의해 파동치는 유체가 되어 군중 속 개개인의 의지와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 ○ 군중 압력의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 군중의 압력은 4,500N을 초과할 수 있으며 수직·수평·경사로 포개지는 경우 압착에 의한 질식 및 신체 손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N) 갈비뼈 골절 → (4,500N) 철재 난간 휨 → (7,000N) 전체 골격 파손 - 1m²당 5명 이상이면 압사위험이 급증하며 7명에 이르면 대형사고 발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참사 : 1m²당 약 12명 수준
대응활동 전략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수준에 이르기 전에 밀집도 증가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혼잡지역) <small>지자체, 행사주최측</small> 관리주체에 의한 인파 흐름 통제(안내요원 배치, 구조물 설치 등으로 <small>입·출입구</small> 통행방향 분리 등), 인원 제한 또는 시차^{時差} 입장(진입) 등 - 경찰에 의한 교통 통제, 차량 통행금지 및 보행자 차도 이용 안내 등 ○ 사고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력(구급대, 구조대 등) 전진 배치 - 대피경로 사전 확인 및 소방력 출동통로 확보 - 화재에 따른 패닉^{panic} 방지를 위한 불씨 관리 및 초기 소화 준비 <small>취약지점 인원 배치, 소화기 배치, 소방시설 점검 등</small> ○ 사상자 발생 시 긴급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분리 조치 및 <small>질식 외 손상(골격계, 장기) 고려</small> 응급처치·이송 -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급차량 소방력 동원 조치 - 사상자 수 등을 고려, 대응단계 선제적 발령 및 지원기관*을 동원하여 통합 지휘·조정·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통제단 가동

부 록

1. 참고자료
2. 통제단 운영 서식

【참고자료】

순번	자료명
1	방사능 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2	양산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부 비상연락망
3	양산시 주요기관 목록
4	중요대상 목록
5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6	긴급구조지원기관 협력관·연락관 현황
7	비상방송 절차
8	비상경고 메시지
9	재난유형별 비상경고메시지 샘플

방사능 사고 유관기관 연락망

※ 특수사고(화학, 생물, 테러 등) 관련 유관기관 연락망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가

기 관 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 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02-397-7282 (야간) 010-9898-2320	F. 02-397-7292
	방재환경과	02-397-7352 (야간) 010-9898-2320	F. 02-397-7362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KINS)	상황실(24시간)	080-004-4949	F. 042-868-0406
	방사선보안대책실장	042-868-0146	휴대폰 자동연결
	방사선원보안대책실	042-868-0027	F. 042-868-0356
	당직실(야간)	042-868-0402	F. 042-861-1700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상황실장(24시간)	080-002-0049	휴대폰 자동연결
	테러및방호상황실(주간)	042-860-9782	
	당직실(야간)	042-860-9800	F. 042-860-9849
한국원자력 의학원	사고접수(24시간)	02-970-2300	
	비상진료센터(주간)	02-3399-5931	
	당직실(야간)	02-970-2121	F. 02-970-2404
방사선 보건연구원	비상의료팀	031-289-3560	F. 031-289-3569
	24시간 응급	031-719-8780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	111(신고센터) 02-572-3023	F. 02-572-5671
국군화생방 방호사령부	지휘통제실	02-2008-6119 02-2008-6340	F. 02-3412-8064
경찰청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112 02-3150-2461	02-3150-1234 (치안상황실)

양산시 긴급구조통제단 지휘부 비상연락망

연번	소속	계급	성명	비상연락처	비고
1	양산소방서	소방정	박승제	010-7345-6121	통제단장
2	양산소방서	소방령	장종운	010-2974-0434	소방행정과장
3	양산소방서	소방령	이평숙	010-6479-9097	예방안전과장
4	양산소방서	소방령	박종규	010-2269-3538	현장대응단장
5	양산소방서	소방령	장덕수	010-8533-5871	동부출장소장
6	양산소방서	소방경	손정원	010-3433-0945	소방행정담당
7	양산소방서	소방경	김종필	010-5592-4562	예산장비담당
8	양산소방서	소방경	주성덕	010-5507-3119	안전지도담당
9	양산소방서	소방경	정진성	010-5159-9778	예방교육담당
10	양산소방서	소방경	권도현	010-5101-2833	민원실장
11	양산소방서	소방경	김정민	010-5591-7924	방호담당
12	양산소방서	소방경	강동훈	010-3591-2266	구조구급담당
13	양산소방서	소방경	윤성영	010-4220-3079	화재조사담당
14	양산소방서	소방경	최기선	010-6776-0119	지휘1팀장
15	양산소방서	소방경	문현식	010-2080-8967	지휘2팀장
16	양산소방서	소방경	이상식	010-4020-5336	지휘3팀장
17	양산소방서	소방경	김형찬	010-6221-6716	동부지휘1팀장
18	양산소방서	소방경	송영민	010-4859-6119	동부지휘1팀장
19	양산소방서	소방경	배철승	010-4525-1196	동부지휘1팀장
20	양산소방서	소방위	양준모	010-6358-8141	인사주임
21	양산소방서	소방위	김병국	010-8765-4374	통제단업무담당
22	양산소방서	소방장	신은정	010-7753-3696	구급업무담당

양산시 주요기관 목록

조 직	연락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양산시청	김문수	010-6500-3053	392-2699
양산시보건소	김민성	010-7228-2894	392-5106
양산경찰서	권한수	010-3849-6034	392-0289
제5840부대 3대대	김종석	010-3122-0209	375-0450
코레일 물금역	윤영경	010-2817-0624	359-4292
산림항공관리소	김주일	010-6659-8624	380-3913
KT양산지점	송종석	010-3455-1660	366-0200
한전전력 양산지사	유희정	010-9395-0299	380-3235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김상호	010-5355-8883	711-6341
(주)경동도시가스 양산지사	원광환	010-3800-0079	371-7266
양산부산대병원	홍준혁	010-8662-7941	360-1113
베데스다병원	안병술	010-3589-5105	781-9842
웅상중앙병원	심남규	010-2672-2077	912-1411
농어촌공사 김해부산양산지사	이호종	010-6393-1096	320-4842

중요 대상 목록

연번	대상명	위치	층		동	연면적	등급	전화번호
			지하	지상				
1	한국복합물류	양산시 물금읍 제방로 27		10	28	207,639	1급	055-371-2119 (010-4102-6013)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2	12	9	151,213.78	1급	055-360-3000 (010-9458-0464)
3	넥센타이어	양산시 총렬로 355	1	5	39	113,391	1급	055-370-5119 (010-8221-2514)
4	동아타이어	양산시 유산공단 11길 11	1	3	11	34,307	2급	055-389-0011 (010-5509-8677)
5	큐엠씨네마타워	양산시 백호로 68	3	7	1	7,580	2급	055-372-0967 (010-3275-3534)
6	(주)화승알앤에이	양산시 총렬로 61	1	5	38	74,886	2급	055-370-3331 (010-2577-9995)
7	(주)화승티앤씨	양산시 어곡공단5길 39		3	16	35,552	2급	055-380-3624 (010-4463-1111)
8	라피에스타양산	양산시 증산역로 177	3	7	1	128,778.04	1급	055-911-5008 (010-4565-0976)
9	롯데제과	양산시 양산대로 1158	1	5	25	80,167	1급	055-370-6114 (010-3653-8694)
10	폼웁스양산지점	양산시 산막공단남2길 11	1	3	9	26,881	2급	055-371-1281 (010-9313-1295)
11	베데스다병원	양산시 신기로 28	1	6	3	5,759	2급	055-384-9901 (010-2510-5845)
12	한창제지	양산시 웅상대로 1564	1	3	15	41,437	1급	970-2000 (010-3855-1721)
13	롯데마트웅상점	양산시 삼호1길 34	1	5	1	30,533	1급	379-2500 (010-8510-5769)
14	(주)세정	양산시 소주공단2길 5	1	6	5	42,895	1급	370-1709 (010-5595-3448)
15	양산병원	양산시 모래들1길 91	1	5	8	10,562	2급	389-1234 (010-5499-8056)
16	웅상중앙병원	양산시 서창로 59	1	5	1	11,608	2급	912-8000 (010-3152-2401)
17	통도사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1	2	78	11,525	2급	055-382-7182 (010-9506-0072)
18	통도환타지아콘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7길 68	1	14	1	29,233	1급	055-379-7000 (010-9567-2688)
19	형주병원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870-64	1	4	3	8,926	2급	055-375-7575 (010-3445-1545)
20	모다아울렛	양산시 중부로 2	4	8	1	28,269	1급	055-363-8263 (010-4572-7842)
21	메가박스	양산시 강변로 440	4	10	1	12,763	2급	055-365-5885 (010-2847-3952)
22	이마트양산점	양산시 양산역6길 12	1	5	1	46,030	1급	055-371-8100 (010-7107-1508)
23	양산남부시장	양산시 중앙로 133		3	1	6,181	2급	055-385-3464 (010-4845-4793)
24	덕계상설시장	양산시 덕계2길 7	1	3	1	11,774	2급	055-387-7414 (010-8864-8832)
25	성심병원	양산시 월라2길45	1	3	1	4,660	2급	055-365-7575 (010-5922-5721)
26	에덴밸리콘도	양산시 어실로 1206	1	9	1	28,895	1급	055-379-8001 (010-8518-5837)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 비상연락망

□ 신문사

신문사	위 치	전화번호	종 류
부산일보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5	051) 461-4114	일간신문
국제신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051) 500-5114	일간신문
경남신문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0-5	055) 238-2219	일간신문
경남도민일보	마산시 양덕2동 151-25	055) 250-0172	일간신문
경남일보	진주시 상평동 237-4	055) 751-1000	일간신문
경남매일	김해시 외동 1104	055) 323-1000	일간신문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중앙로 188	055) 362-6767	지역신문
양산신문	양산시 중앙로 109-1	055) 385-0900	지역신문
양산벼룩시장	양산시 양산대로 884	055) 389-0066	지역신문
양산교차로	양산시 신기3길 2	055) 383-1236	지역신문

□ 라디오방송국

방송국	주파수	주 소	전화번호	보도국 전화번호
KBS 방송국	91.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9	051) 620-7100	051) 620-7410
MBC 방송국	106.5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8번길 69	051) 760-1000	051) 760-1111
KNN방송국	96.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센텀서로 30	051) 850-9000	051) 850-9416
TBN교통방송	94.9	부산광역시 남구 요소로 68	051) 610-5114	051) 610-5224

□ TV 방송국

방송국	채널	주 소	보도국 전화번호	보도국 팩스번호
부산 KBS방송국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9	051) 620-7410	
KBS 창원총국	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78	051) 287-2121	
부산 MBC방송국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8번길 69	051) 760-1111	
MBC경남창원본부	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9길 11-11	051) 250-5000	
KNN방송국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051) 850-9416	

긴급대응협력관·연락관 비상연락망

지원기관	근무부서	직위	이름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양산시청	시민안전과	과장	최단오	055-392-2690	010-3872-3942
	시민안전과	주무관	김문수	055-392-2835	010-6500-3053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팀장	장병기	055-392-5101	010-3472-4580
	보건행정과	주무관	김민성	055-392-5106	010-7228-2894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과장	최명국	055-392-0255	010-4515-8136
	경비교통과	경위	권한수	055-392-0289	010-3849-6034
제5870부대 3대대	지원과	대위	강병준	055-329-2013	010-8809-6858
	지원과	상사	김종석	055-329-2013	010-3122-0209
한국철도공사 물금역	물금역	역장	임인섭	055-383-7788	010-4596-9447
	물금역	부역장	윤영경	055-383-7788	010-2817-0624
양산산림 항공관리소	안전항공팀	팀장	최대정	055-380-3911	010-5572-7110
	안전항공팀	주무관	김주일	055-380-3913	010-6659-8624
KT양산지점	CM팀	팀장	김희철	055-366-0200	010-9507-9500
	CM팀	차장	송종석	055-366-0200	010-3455-1660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부	차장	장희석	055-380-3275	010-2900-8328
	전력공급부	대리	유희정	055-380-3276	010-9395-0299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도로안전팀	팀장	김동광	055-711-6304	010-7745-5388
	도로안전팀	과장	김상호	055-711-6341	010-5355-8883
(주)경동도시가스 양산지사	고객안전팀	차장	신영주	055-371-7263	010-8524-4855
	고객안전팀	과장	원광환	055-371-7261	010-3800-0079
양산부산 대학병원	총무팀	팀장	부성익	055-360-1110	010-9727-1218
	총무팀	행정6급	홍준혁	055-360-1113	010-8662-7941
베데스다병원	총무팀	팀장	최현태	055-781-9842	010-3811-5390
	총무팀	과장	안병술	055-781-9838	010-3589-5105
웅상중앙병원	시설팀	차장	정일교	055-912-1421	010-8687-3030
	시설팀	팀장	심남규	055-912-1410	010-2672-2077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양산지소수전관리	부장	조현규	055-320-4840	010-5365-3683
	양산지소수전관리	계장	이호종	055-320-4842	010-6393-1096

【참고 1】 비상방송 절차

1. 비상경고메시지의 초안을 작성한다.(참고 2 참조)
2. 양산시 재난대책본부 재난홍보상황실에 협조 요청
- 재난홍보상황실(소통담당관실) : 055-392-2091~3
3. 비상경고메시지를 전달하며, 각 방송국에 비상방송이 송출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양산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절차임

【참고 2】 비상경고 메시지

□ 메시지 1 --- 재난발생 후 최초 메시지

1. 양산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공지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 사고가 (장소명)에서 발생했습니다. _____ 로 인하여 _____화학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명)의 (반경 Km)내의 모든 사람들은 본 방송을 계속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지역은 북쪽으로 (이름)도로, 동쪽으로 (이름)도로, 남쪽으로 (이름)도로, 서쪽으로 (이름)도로입니다.
2. 지금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마십시오. 대피가 필요하게 되면 대피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대피지시를 듣게 되면 즉시 보호장소를 찾아서 대피하십시오. 119대원(소방관)들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메시지 2 --- 위험지역 내 보호 메시지

1. (장소명) 주변의 (어떤 지역의 반경 00Km 및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몇 00Km 내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2.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남쪽으로 주소(숫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주소(이름)까지의 (거리명)의 북쪽 (이름) 거리의 양쪽 편 거주민
 - b) (이름)도로의 서쪽 주소(숫자)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름)천까지의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c) 남쪽으로 (사업장명)부터 북쪽으로 (이름)도로 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d) (이름)도로의 동쪽에 있는 (사업장명)부터 가차길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e) (이름)도로에서부터 (이름)도로의 _km 북쪽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f) (이름)천 동쪽 편과 (이름)도로 남쪽 거주민들은 보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3. 위험지역내 거주민들은 즉시 가장 가까이 있는 빌딩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의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서 외부공기의 유입을 줄이고 냉난방장치를 꺼서 공기 소모량을 줄이십시오. 위험지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창문과 통풍구를 닫고 차량의 냉난방기를 끄십시오. 모든 거주민들은 이후의 상황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에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4.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19종합상황실 대중정보센터 내 유연비어통제팀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000-0000 ~ 0번입니다.

□ 대피 메시지

1. (장소명) 주변의 (어떤 지역의 반경 00km 및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몇 00km 내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2.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남쪽으로 주소(숫자)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주소(이름)까지의 (거리명)의 북쪽 (이름) 거리의 양쪽 편 거주민
 - b) (이름)도로의 서쪽 주소(숫자)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름)천까지의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c) 남쪽으로 (사업장명)부터 북쪽으로 (이름)도로 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d) (이름)도로의 동쪽에 있는 (사업장명)부터 가차길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e) (이름)도로에서부터 (이름)도로의 km 북쪽까지 (이름)도로의 양쪽 편 거주민
 - f) (이름)천 동쪽 편과 (이름)도로 남쪽 거주민들은 보호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3. 위험지역 내 거주민들은 즉시 위험지역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꼭 필요한 소집품 등만 간편히 챙기시고 위험지역 밖 지정 된 대피소로 모두 이동하십시오, 차량을 운행할 경우 창문과 통풍구를 닫고 차량의 냉난방기를 끄십시오 모든 거주민들은 이후의 상황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에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4.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19종합상황실 대중정보센터 내 유연비어통제팀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000-0000 ~ 0번입니다.

【참고 3】 재난유형별 비상경고메시지 샘플

지진(붕괴 화재 등 복합재난)
<p>오늘 ___시에 리히터 지진계로 진도 ___로 기록된 지진이 ___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진원지는 ___입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활동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인명피해, 붕괴지역, 화재 등 피해상황을 알린다.)</p> <p>현재 ___시 긴급구조통제단이 설치되었으며, 적십자는 이재민들을 위해 ___에 대피소를 설치하고, ___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숙박과 음식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p> <p>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을 외부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은 철근이 없는 오래된 석조건축물입니다..(보통 벽돌건물임)</p>

위험물질(제한된 유출)
<p>이 곳은 ___의 ___입니다. 위험물질인 (물질명)의 소량이 ___에 유출/방출되었습니다. 도로가 폐쇄되었고 교통통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p> <p>그 물질은 인체에 미치는 독성은 약하지만/강하고,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_____</p> <p>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___지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회도로는 ___입니다. 위험지역과 가까운 곳에 계신 경우에는 출동한 소방관(또는 비상대응요원)의 지시에 따르십시오.</p> <p>협조에 감사드립니다.</p>

위험물질(확산에 따른 대피 필요)

이 곳은 ___의 ___ 입니다. 위험도가 매우 높은 물질인 (물질명)의 (다량/소량)이 ___에서 유출/방출되었습니다.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___ km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지역 내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지금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지역 밖에 있는 친구나 친척의 집 또는 (장소)에 설치된 대피소로 즉시 대피하십시오. 차량에 여유가 있다면 주변의 이웃을 태우고 가십시오. 차량이 필요하다면 ___로 전화하십시오.

(학교목록)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장소)의 대피소로 대피할 것입니다. 학생을 태우기 위해 학교로 가지 마십시오. 학교당국이 대피소로 학생을 대피시킬 것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경청하십시오.

그 물질은 인체에 독성이 높고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을 설명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위험지역 밖의 병원이나 OO에 있는 대피소로 이동하시고 자력대피가 불가능한 사람은 119에 구조 요청하십시오. 반복하겠습니다. ___ 지역에 있는 사람은 즉시 안전을 위해 대피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도로 통제, 출입 통제

여기는 ___의 ___입니다. 최근의 폭풍우로 인하여 시의 (몇 개의/많은) 지역에 (심각한/심하지는 않은)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도로명)도로의 통행이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도로에 접근하지 마시고 우회도로를 이용하십시오. 모든 해안도로에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폐쇄된 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의 도로폐쇄정보를 청취하기 위해 이 방송을 계속 경청하여 주십시오

폭풍, 태풍

여기는 ___의 ___입니다. 이번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지역 내에서 구경을 하려고 하면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바깥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위험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지역 설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수, 집중호우

여기는 ___의 ___입니다. 이번 호우(홍수)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피해지역 내의 모든 사람은 지금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대피장소 설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폭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식】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서식

※ 해당 운영서식은 재난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감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순번	부별	서식명
1	대응계획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2		비상소집 응소부
3		긴급구조통제단 임무 지정서
4		상황판단(통합지휘)회의 실시 결과 보고서
5		지휘권 이양 협의서
6		언론 브리핑
7		비상경고 메시지
8		재난현장 공동취재단 명단
9		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등록
10		재난 대응 상황 보고서
11		재난현장 상황분석
12		재난현장 작전 계획
13		긴급구조 대응활동 종합 보고서
14	자원지원부	소방력 동원 현황
15		자원집결지 운영 현황
16		수송대기지역 운영 현황
17		긴급구조관련기관 동원 현황
18		무선통신장비 관리(배부,반납) 대장
19		자원대기소 운영(인원,장비) 현황
20		지원장비 및 물품 입,출고 현황
21		재난현장 종사자 급식 및 숙박 현황
22	현장지휘부	인명구조현황
23		현장 통제 현황
24		통제단 출입증 교부 대장
25		의용소방대원 배치 현황
26		의료자원 배치 현황
27		사상자 조치 현황
28		사상자 이송 현황
29		병원별 수용능력표

긴급구조통제단 대응계획부

- 1)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일지
- 2) 비상소집 응소부
- 3) 긴급구조통제단 임무 지정서
- 4) 상황판단(통합지휘)회의 실시 결과 보고서
- 5) 지휘권 이양 협의서
- 6) 언론 브리핑
- 7) 비상경고 메시지
- 8) 재난현장 공동취재단 명단
- 9) 지원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등록
- 10) 재난 대응 상황 보고서
- 11) 재난현장 상황분석
- 12) 재난현장 작전 계획
- 13) 긴급구조 대응활동 종합 보고서

○○재난 긴급구조통제단 임무 지정서

연번	부서	계급	성명	연락처	업무지정	서명
1	○○부	소방경	홍길동	010-000 -0000	보고서 작성 지원기관 관련 업무 등	

작성자 계급: 성명 (인)
 대응계획부장 계급: 성명 (인)

○○재난 상황판단(통합지휘)회의 실시 결과

차수	일시	상황판단회의 내용	참여기관 (부서)
1	00.00 00:00	<p>(대응계획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재난 발생 보고 및 분석에 관한 상황 <p>(자원지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제단 통신망 구축, 자원인력·장비 보유 상황 <p>(현장지휘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및 인명피해, 자원대기소 운영 방안, 자원대기소, 현장통제, 응급의료소 운영 등 관한 상황 <p>(00경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접수 및 현장대원 의식주 해결, 오염통제 필요 인력 및 장비현황 파악 등 	통제단장 00부장 00통합지원 본부 00경찰서, 00군부대 등
2	2021.0 0.00 00:00	<p>(대응계획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판단회의에 따른 작전계획 적절성 등 <p>(자원지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지원체계 및 현장인력·장비지원, 자원집결지 운에 관한 상황 <p>(현장지휘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현황, 자원대기소, 현장통제, 응급의료, 항공통제에 관한 상황 <p>(긴급복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의 구호, 현장대원의 의식주 지원 오염 통제에 관한 상황 등 	통제단장 00부장 00통합지원 본부 00경찰서, 00군부대 등

작성자 계급: 성명 (인)

대응계획부장 계급: 성명 (인)

00사고 관련 브리핑 (0차)

배포일시	2020.00.00.(0)	보도시점	
담당자		연락처	

◇ 00 소방서장(또는 00소방서 000)입니다.

-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하여 유가족 및 부상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 오늘 오후 00시 00분경에 00구에 위치한 00문화체육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붕괴)사고의 현황과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고개요’입니다.

- 0월 0일 00시 00분에 00시 00구 00동 00문화체육센터의 보일러실에서 최초 발화하여 1층으로 연소 확대가 되었으며, 건물 내 운동을 하고 있던 동호회원과 직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체육센터에는 동호회원 00명, 센터운영직원 00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현황’입니다.

- 인명피해는 00명으로 추정(잠정)되고, 정확한 사상자 현황은 잠시 후 현장 응급의료소장인 00보건소장이 발표하겠습니다.
- 재산피해는 체육센터 1동 화재로 전소 및 붕괴 되었습니다. 정확한 피해현황은 조사 중으로 향후 합동 조사예정입니다.

◇ 다음은 ‘동원현황’입니다.

- 현재 동원 된 소방력은 헬기 0대, 고성능화학차량 등 차량 00대, 00특수119구조대 등 인원 000명입니다. (00소방본부를 비롯한 00개 타·시도 본부에서 동원되었습니다.)
- 유관기관 동원현황입니다. 경찰, 지자체, 가스, 한전 등 00개 기관 굴삭기 등 장비 00대, 인원 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보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조치사항’입니다.

- 00시00분 최초 신고 접수하여 00시00분 (현장으로부터 00km에 위치한 00안전센터)가 도착하였으며, 피해 확대 가능성에 따라 00시00분 대응1단계를 발령하여 전직원 비상소집 및 00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 00시00분 양산소방서장이 현장도착 후 현장지휘에 임하고, 소방 및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인명피해 현황’은 현장응급의료소장이 발표하겠습니다.

- **응급의료소장 발표**
예시) 현재 사상자 00명 중 사망자 0명, 긴급 0명, 응급 0명, 비응급 0명입니다. 긴급, 응급환자 00명은 00병원 0명, 00병원 0명 등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중에 있으며, 사망자 0명은 임시 영안소에 안치 중입니다. 세부적인 사상자 현황은 나눠드린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 브리핑을 마치며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소방당국은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사항은 다음 브리핑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브리핑은 00시 00분(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장소)에서 사전 공지 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비상경고 메시지(0보)

(주) 00산업 공장 내 유해화학 물질 누출

1. 00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00산업 공장' 공장에서 염산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북동 쪽 방향으로 유독가스가 확산되고 있으니 피해예상지역 주민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2. 피해 예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00 산업 공장을 중심으로
가. 하남공단 주변
나. 안청동 일대
다. 비아동 일대
3. 위험지역 내 거주민들은 즉시 00산업 공장으로부터 00km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모든 거주자들은 이후의 상황과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에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4.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119상황실 대중정보센터 내 유언비어통제팀으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000-000-0000번입니다.

작성자 계급: 성명 (인)

대응계획부장 계급: 성명 (인)

○○○재난 대응 상황 보고서

1. 사고개요

가. 일 시: 0000. 00. 00.() 00:00

나. 장 소: / 소유자 :

다. 건물구조: 식 조, 층, 동, 연면적 m²

라. 상황개요: 2021. 00. 00. 00시경 00광역시 0구 00동 소재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및 위험물이 누출되어 하천 및 주변 지역이 오염예상되며, 주변 옥외탱크저장소도 폭발로 ~~~ 2차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관할 소방서 지휘부는 시도차원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대응2단계 발령한 상황임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부상)

연번	성명	나이	남/여	부상부위	이송병원	이송구급대
1						
2						
3						

나. 재산피해: 백만(동산 , 부동산)

다. 그 밖의 피해:

3. 동원사항

가. 인력: 명(소방 , 경찰 , 군부대 , 유관기관 , 기타)

나. 장비: 대(소방 , 경찰 , 군부대 , 유관기관 , 기타)

4. 향후전망 및 대책

가. 하천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상되어 소방 및 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 동원 필요

나. 위험물 누출 및 화재 진압 장시간 소요 예상 ⇒ 전 소방서 직원 비상소집

5. 기상상황 : 강풍주의보 발효(초속 14m/s / 순간 풍속 20m/s)

6. 시간대별 대처사항

○ (09:28) 119신고접수

○ (09:52) 선착대 현장도착(소방차 15대, 인원 57명)

재난현장 지도 및 도면

재난현장에 대한 위치도 및 도면

○○재난현장 상황분석

재 난 명			
작성일시		작성자	
대응기간			
일반대응목표	상황분석에 따른 대응목표(작전계획반의 기초자료 활용)		
상황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피해 현황: <i>피해 상황분석 편람 참조</i> 2. 현 상황 (<i>해결해야 할 문제 위주 개조식 기술</i>) 3. 임 무 (<i>해결해야 할 하위 대응목표</i>) 4.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즉각적(각 부, 지원기관, 유관기관 등) 조치사항</i> - <i>12시간 예측에 따른 조치사항</i> 5. 필요자원 (<i>예측</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지원기관단체 현장대응자원 협조사항</i> - <i>긴급대피소 협조사항</i> - <i>시설, 기타 물품 협조사항</i> 6. 통신체계 구축 (<i>UHF, PS-LTE 등</i>) 7. 일기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현 기상상태</i> - <i>24시간 후</i> 		

작성자 계급: 성명 (서명)
 대응계획부장 계급: 성명 (서명)

피해 상황분석 편람

사망(부상)자 피해상황

순번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사망위치	사망(부상)원인	부상부위

부동산(건물) 피해상황

피해물건명	피해의 종별 (소손, 수손, 기타)	수량 또는 면적	경과년수

동산(차량 등) 피해상황

품명	수량	피해액	피해의 종별 (소손, 수손, 기타)	피해장소	비고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누출상황

품명 또는 유별	총수량	누출량	누출범위	피해상황	비고

작성자 계급: 성명 (서명)
 대응계획부장 계급: 성명 (서명)

○○재난현장 작전 계획

재 난 명									
작성일시					작성자				
사고개요									
<p>1. 일 시:</p> <p>2. 장 소:</p> <p>3. 원 인:</p> <p>4. 개 요:</p> <p>5. 피해상황</p> <p style="margin-left: 20px;">-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p> <p style="margin-left: 40px;">• 이재민 현황: 세대 명</p> <p style="margin-left: 40px;">※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이재민 현황: 별첨참조</p> <p style="margin-left: 20px;">- 재산피해: 백만(동산 , 부동산)</p> <p style="margin-left: 20px;">- 그 밖의 피해:</p> <p>5. 유형별 피해현황</p>									
건축물	피해동수	동	연면적	m ²	바닥면적	m ²			
	소실면적	m ²		그을음 면적	m ²				
차량	소실대수	전소 대, 반소 대, 부분소 대							
위험물	유별/수량				누출량				
	누출범위 및 피해상황								
<p>7. 동원인력 및 장비</p> <p style="margin-left: 20px;">- 인력: 명(소방 , 경찰 , 군부대, 공무원 , 민간인)</p> <p style="margin-left: 20px;">- 장비: 대</p>									
계	지휘차	구조차	펌프차	구급차	고가/굴절	경찰	군부대	유관기관	기타

작성사항

1. 현재 재난 상황 : 해당 건물은 00물류창고로서, 연면적 000m², 바닥면적 m² 00/00층 건물로서 현재 지하00층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며, 현재 00층 00지역까지 연소되고 있음. 건축물 구조는 00식으로 연소확대 빠르고 내부 가연물이 많은 관계로 연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초기 화재신고 시 지하00층00실에 사람이 00 있었다고 하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정보는 없음.
2. 현장활동 위험성 및 예측
 - 내부 소방시설이 화염으로 작동하지 않음
 - 물류창고로서 가연물이 많아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움
 -
3. 재난대응 조치사항
 - 조치사항
 - 건물 측면에 00펌프 10대, 물탱크 6대를 배치, 고성능화학차 2대를 배치하여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 애로사항
 - 내부 진입이 힘들고, 가연물이 많은 관계로 화재진압이 어려움
 - 해결방안
 - 무인방수차 등을 내부로 진입하게 하여 연소확대 방지에 주력
4. 지원 및 협조사항(인원 및 장비 지원, 할당 등)
 - 중구본 및 타 시도 고성능 화학차 지원 필요
 - 소방청 동원령 요청
 -
5. 향후 재난전망 및 대책
 -
 -
 -
6. 일기예보
 - 현 기상상태 :
 - 24시간 후 :

재난현장 지도 및 도면

재난현장에 대한 위치도

긴급구조 대응활동 종합 보고서

[202 . . . ()]

2021. 00. 00. 00시경 00광역시 0구 00동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한 긴급구조대응활동 종합보고서임.

1. 발생개요

- 가. 기 간:
- 나. 발생장소:
- 라. 발생원인:

2. 피해현황

- 1) 인명피해: 명(사망 명, 부상 명)
- 2) 재산피해: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3. 동원현황

- 가. 인원:
- 나. 장비:

4. 주요 조치사항(긴급구조대응계획 기능별 계획에 따른 조치사항)

- 가. 지휘통제
-
- 나. 비상경고
-
- 다. 대중정보
-
- 라. 구조진압 등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 문제점
- 나. 개선방안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지원부

- 1) 소방력 동원 현황
- 2) 자원집결지 운영 현황
- 3) 수송대기지역 운영 현황
- 4) 긴급구조관련기관 동원 현황
- 5) 무선통신장비 관리(배부, 반납) 대장
- 6) 자원대기소 운영(인원, 장비) 현황
- 7) 지원장비 및 물품 입, 출고 현황
- 8) 재난현장 종사자 급식 및 숙박 현황

○○재난현장 자원집결지 운영 현황

자원집결지	0000운동장	운영자 • 00소방서(000,000,000,000,000) • 소방본부(000,000,000,000,000)
집결지 주소	000시 000구 00-111번지	

1. 자원집결지 개요

- 운영일시 : 0000.00.00. 00:00 / ○ 종료일시 : 0000.00.00. 00:00
- 책임관 : 000 ☎ 010-000-0000
- 운영인원 : 0명(소방위 000 / 010-000-000, 소방장 000 / 010-000-000)

2. 집결 소방력

- 집 결 : 0 시·도 0 기관 0 대 0 명
- 출 동 : 0 시·도 0 기관 0 대 0 명, 0 개소
- 대 기 : 0 시·도 0 기관 0 대 0 명
- 자원대기소 : 0 시·도 0 기관 0 대 0 명

○ 집결 세부현황

- 장 비 : 펌프 대, 물탱크 대, 구급차 대, 00차 대, 00차 대

동원 시·도	서	센터	차량 (번호)	탑승 자	전화번호	도착시간	집결지	연락관 (연락처)
예)대구	본부		구급	유관순	0000-0000			책임연락관 (0000-0000)
경북	북부	대현	펌프	홍길동	0000-0000	05:17	종합운동장	인솔자
				이순신				
				임꺼정				

3. 주요 배치

일 시	장 소	소속	장비 (대)	인원 (명)	내 용

작성자 계급: 성명 (서명)
 자원지원부장 계급: 성명 (서명)

○○재난현장 수송대기지역 운영 현황

1. 수송대기지역 개요

- 운영기간 : 0000.00.00. 00:00 ~.00.00. 00:00
- 장 소 : 0000운동장
- 운영소방서 : 00소방서
- 주소(위치) : 000시 000구 00-111번지
- 책 임 관 : 소방0 000 ☎ 010-000-0000
- 운영인원 : 0명(소방위 000 / 010-000-000, 소방장 000 / 010-000-000)

2. 동원차량 현황

연번	일 시	기관·단체 및 업체	장비 (대)	인원 (명)	책임자		비고
					성명	연락처	
1	00.00. 00:00	00관광버스	3대	4	홍길동	010-1234-5678	

3. 이송현황

연번	일 시	기관·단체 및 업체	운전기사		이송 인원	이송지역	비고
			성명	연락처			
1	00.00. 00:00	00관광버스	홍길동	010-1234-5678	35	재난현장 (자원대기소)	

작성자 계급: 성명 (서명)
 자원지원부장 계급: 성명 (서명)

지원장비 및 물품 입·출고 현황

관리 번호	지원기관 · 단체	연락처	장비·물품	수량	입고일시	출고일시	반납일시	수령자				내용	비고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1-1	A방재기업	010-1234 -5678	흡착포	4박스	00.00. 00:00	00.00. 00:00		00119 안전센터	소방위	홍길동	010-9876 -5432	기름누출방재 작업용	소모품
1-2	A소방서	010-1234 -5678	동력펌프	2대	00.00. 00:00	00.00. 00:00	00.00. 06:00	00119 안전센터	소방위	홍길동	010-9876 -5432	배수작업	작업 완료
1-2	A소방서	010-1234 -5678	동력펌프	2대	00.00. 06:00								

작성자 계급: 성명 (서명)
 자원지원부장 계급: 성명 (서명)

재난현장 종사자 급식 및 숙박 현황

연번	일 자	급식 위치	급식 인원(명)					숙박 장소	숙박 인원(명)					비고
			계	대응 계획부	현장 지휘부	자원 지원부	현장 대원		계	대응 계획부	현장 지휘부	자원 지원부	현장 대원	
1	00.00.00.	자원지원부 우측	41	11	12	8		00모텔	23	7	6	5		

※ 숙박장소별 세부인원은 별도 서식으로 작성

작성자 계급: 성명 (서명)
 자원지원부장 계급: 성명 (서명)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부

- 1) 인명구조 현황
- 2) 현장 통제 현황
- 3) 통제단 출입증 교부 대장
- 4) 의용소방대원 배치 현황
- 5) 의료자원 배치 현황
- 6) 사상자 조치 현황
- 7) 사상자 이송 현황
- 8) 병원별 수용능력표

○○재난현장 인명구조 현황

연번	구조대원		구조일시	구조위치 (구체적으로 작성)	구조대상자				비고
	소속	성명			성명	성별	나이	부상정도	
	00소방서 00구조대	이구조 나구조 신구조	00.00. 00:00	화점층 00호 욕실	000	남	00세		응급의료계 소응급
	00센터								

작성자 계급: 성명 (서명)

현장지휘부장 계급: 성명 (서명)

○○재난현장 통제 현황

차수	통제시간	통제구역	통제인원	비고
1차				
2차				
3차				
그외	09:00~ 11:00	삼산로 2가 교차로에서부터 번영길 SS호텔 앞 사거리까지 전면통제	세종경찰지구대 경위 000외 5명	교통방소 우회도로 안내
※ 위치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300px; margin-top: 10px;"></div>				

작성자 계급: 성명 (서명)
 현장지휘부장 계급: 성명 (서명)

○○재난현장 사상자 조치현황

사망자 : 총 명 (남 : ,여 :)

- 안치상황

안치장소	사망자수	성별		비고 (특징)
		남	여	
계				

- 사망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가족)	비 고

부상자 : 총 명 (남 : ,여 :)

- 이송상황

수용장소	부상자수	성별		비고 (특징)
		남	여	
계				

- 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가족)	병원명	연락처

